

연구보고 2009-07

#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Ⅱ) -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최 환 용

#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Ⅱ)

–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Investigation Research on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 of Autonomous Legislation(Ⅱ)

– Focus on the Autonomous Legislation of the Fundamental  
Area Local Self-government –

연구자 : 최환용 연구위원

2009. 10. 31.

## 국문요약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기초로 한다. 이 때 주민의 자기결정권은 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자치입법권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는 지난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조사에 이어서 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자치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의 현 주소를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보다 협소한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무배분에 관한 보충성의 원칙이 형식적으로 적용됨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요소인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국가의 입법에 관한 기본원칙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합성 및 보충성의 원칙에 적합하게 정립해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대 대도시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치구의 자치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단체별 자체 심사기능의 강화,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자치법규심사지원단”과 같은 지원기능의 강화 등이 요청된다.

※ 키워드 : 자치입법권, 기초자치단체, 자치입법 실태, 보충성의 원칙, 자치조례

## Abstract

The essence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are to own decisive power and own responsibility of the resident. In this time, own decisive power of the resident is expressed by the autonomous legislation authority which is established with decision of the local assembly which is composed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This report is to succeed the autonomous legislation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of the wide area self-government body which is accomplished at 2008.

This report proved the present address of autonomous legislation authority through investigating the autonomous legislation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fundamental self-government which is an autonomous unit which gets near the resident.

When summarizes an investigation result, the fundamental self-governing body was exercising an very narrow autonomous legislation authority. This result shows the supplement principle being applied formally.

In order guarantees the autonomous legislation authority which is a core element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e national legislation principle which is related in local self-government must take a triangular position. And reinforcement of self-government by oneself mind function, and must strengthen the autonomous legislation review support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about autonomous legislation.

※ Key Word : the autonomous legislation authority, the fundamental self-government, the autonomous legislation actual condition, the supplement principle, the autonomous regulation

# 목 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1.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결과 .....	11
2. 연구의 범위 및 조사방법 .....	12
제 2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검토 .....	15
제 1 절 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간 관계 .....	15
1. 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배분 .....	15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	16
제 2 절 기초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범위 .....	19
1. 자치입법권의 의의 .....	19
2. 기초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20
제 3 절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설문조사결과 .....	20
1. 설문조사 개요 .....	20
2. 설문조사 결과 .....	22
3.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	43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	47
제 1 절 자치입법의 일반현황 .....	47

1. 자치법규의 운영실태 .....	47
2.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위임법령 현황 .....	52
제 2 절 자치입법 실태조사 개요 .....	70
1. 조사의 개요 .....	70
2. 자치구 및 시·군의 사무범위 .....	71
3. 자치구 및 시·군의 자치법규집 편재 .....	78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	80
1. 조사개요 .....	80
2. 지방의회 관련 자치입법의 실태 .....	80
3. 기획예산 관련 자치입법의 실태 .....	83
4. 문화체육 관련 자치입법의 실태 .....	88
5. 자치행정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93
6.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99
7. 도시관리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10
8. 읍·면·동·반에 관한 자치입법 .....	116
제 4 절 시·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	118
1. 조사개요 .....	118
2. 지방의회 관련 자치입법 실태 .....	120
3. 기획감사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22
4. 총무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26
5. 예산 및 재무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32
6.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33
7. 환경녹지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38
8. 지역경제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42
9. 건설 및 도시주택분야의 자치입법 실태 .....	148

10. 보건, 읍·면·동 등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57
11.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63
12. 정책사업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64
13. 문화공보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	165
제 5 절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	171
1.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자치입법 실태 비교 .....	171
2. 시·군과 자치구간 자치입법 실태 비교 .....	173
제 4 장 자치입법의 체계적 정립방안 .....	175
제 1 절 지방자치에 관한 국가 입법원칙 정립 .....	175
1. 문제의 제기 .....	175
2.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의 의미 .....	175
3.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의 “입법원칙” .....	176
제 2 절 자치구의 자치기능 재검토 .....	177
1. 현행 자치구의 자치기능에 대한 검토 .....	177
2.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자치구의 자치기능 검토 .....	178
제 3 절 자치법규의 자체 심사기능 강화 .....	179
1. 현행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대한 검토 .....	179
2. 자치법규 자체심사 기능의 강화 .....	179
참고문헌 .....	181
<b>【부 록】 자치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b>	<b>187</b>

##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은 우리나라의 행정체계 뿐만 아니라 규범적 차원에서도 조례를 비롯한 자치입법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로서 그동안 학계에서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들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성을 둘러싼 학술적 가치는 있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의 모습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제도의 운용상황을 평가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현행 자치입법의 체계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2008년도 실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연구에 이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자치입법권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자치입법의 체계적 정립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결과

2008년도에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에 따르면 2008년 5월 기준으로 16개 광역시·도의 조례 평균보유



건수는 257건으로 1997년과 비교하여 자치단체별로 평균 62건, 총건수로는 984건 증가하는데 그쳐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그다지 확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은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지방분권정책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07년 한 해 동안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된 조례는 총 1,490건으로 자치단체별 평균 처리건수가 93.1건에 그쳐 자치입법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이 여전히 높지 않고, 조례의 규범력이 낮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자치법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임조례는 주로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사무의 위임, 위원회 설치 위임, 재정지원에 관한 위임,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의 위임, 부분적 행정권한 행사를 위한 위임 등의 유형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위임의 범위가 매우 좁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복지, 문화/체육/관광이나 산업진흥분야에서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등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자치입법의 실제적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 등 경비의 지원, 위원회 구성 등 정책수단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근거가 충분하지 못해서 조례의 규범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2. 연구의 범위 및 조사방법

이 연구에서는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조사연구에 이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자치입법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이며,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도의 시·군으로 각각 그룹화하여 조사하였다.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은 지면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 1개소와 도 1개소를 선정하여 각각의 자치구와 시·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자치구와 시·군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에서 자치권의 범위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검토를 부가하였다.

주된 분석대상으로는 인천광역시의 6개 자치구·2개 군과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16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인천광역시는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몇 년간 조례제정건수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많고 수도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sup>1)</sup>

충청남도의 16개 시·군을 선정한 이유는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단위에서 평균적인 조례제정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전국 평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더불어서 2008년도에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와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자치중층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평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자치입법에 대한 태도와 인식 조사 등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병행함으로써 향후 자치입법의 체계적 정립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최환용,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조사연구-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2008), pp.92-93

## 제 2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검토

### 제 1 절 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간 관계

#### 1. 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배분

우리 헌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조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② 시·군·구로 구분하고 있으며<sup>3)</sup>, 이러한 자치단체의 종류는 각각이 미치는 자치권의 지역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각각이 처리하는 사무의 관할이 달라지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른 사무의 배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시·도는 ①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

---

2)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도, 230개의 시·군·구가 있다.

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를 관할하도록 하고, 시·군·구는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각각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가 경합되었을 때에는 시·군·구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등 일부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처리하게 되며, 제10조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도의 사무 중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자치구간 사무의 범위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사무의 범위가 다르다.<sup>4)</sup>

그밖에 지방자치법 제8조 이하에 예시되어 있는 사무는 개별법령에 따라서도 달라진다.<sup>5)</sup>

##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 (1) 개 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2계층제로 실시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상위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3계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계층체계상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인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대민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실무자로서의 역할을

4)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2(제9조 관련)와 별표3(제10조 관련) 참조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각각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하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구역의 광·협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각각 자신의 관할구역내에서 독립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하여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 법인격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의 여러 규정들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 (2) 불합리한 기능·사무배분의 관계

우선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서 지방자치법 제24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일반적 한계와 더불어 “시·도의 조례나 규칙”이라는 이중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sup>6)</sup>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는 사무배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단지 광역시·도가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가 일정한 사무를 선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

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전래되었다는 전래설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는 국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법 제24조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무가 법령에 의해서 선점되어 있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무의 중복배분되어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4조가 주민에 가장 근접한 자치단위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며,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임받아 처리한다. 이러한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여전히 협력관계보다는 상하관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 (3)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관계

기초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관여나 감독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이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9장에서는 제166조에서 제172조에 이르기까지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167조에서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170조에서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71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감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배분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관계는 기본적인

으로 독립·대등한 관계여야 함에도 기관위임사무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시·도지사의 광범위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함으로써 결국 양자간의 관계는 법률적으로 상하관계에 놓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제 2 절 기초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범위

### 1. 자치입법권의 의의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일정한 규율을 정립할 수 있는 입법권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sup>7)</sup>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범위를 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되는 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제정권이 행사되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sup>8)</sup> 이러한 조례를 위임조례라 한다.

7)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일반이론은 2008년도 연구보고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8) 대판 2000. 5. 30, 선고 99추85판결(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 2. 기초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입법권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보다 협소하다. 즉, 기초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또한 기초자치단체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사항적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례의 규율대상인 인적·지역적 범위가 중복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배분 기준을 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사무가 경합되면 시·군·구에서 우선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간에 사무가 명확하게 배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무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가능한가는 해당 사무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제 3 절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설문조사결과

### 1.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의 목적과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로 그동안 하계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자치입법 관계자 즉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치입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조사는 자치입법을 직접 심의하고 의결하는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입법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확인함



으로써 자치입법의 체계적 정립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2) 조사설계

앞에서 제시한 설문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설문조사는 시·군·구에 속해 있는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의 크기는 소속별로 지방의회 의원 16명,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4명,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1명으로 총 5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6명, 여성이 15명이며, 근무연수별로는 4년 이하가 19명, 4년 이상 8년 이하가 7명, 8년 이상 12년 이하가 4명, 12년 이상이 21명이다.

총 설문수는 10개 문항으로 자치입법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51	100.0
구 분	시	13	25.5
	군	16	31.4
	구	22	43.1
소 속	지방의회 의원	16	31.4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4	27.5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1	41.2
성 별	남성	36	70.6
	여성	15	29.4
연 령	20대	2	3.9
	30대	15	29.4
	40대	17	33.3
	50대	12	23.5
	60대이상	5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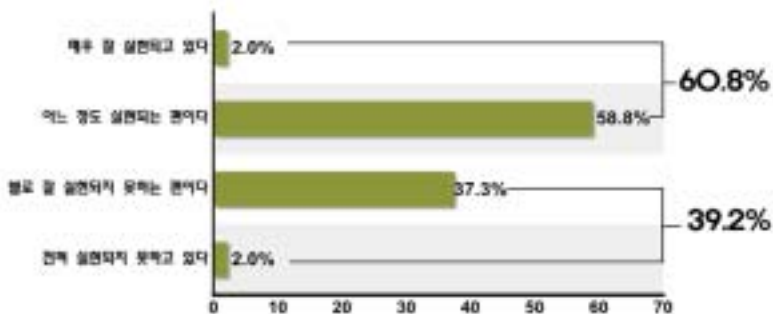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명)	비율(%)
근무년수	4년 이하	19	37.3
	4년~8년 이하	7	13.7
	8년~12년 이하	4	7.8
	12년 이상	21	41.2

## 2. 설문조사 결과

### (1)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실현 정도에 대한 이해도

#### ① 지방자치 실현 정도에 대한 이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실현 정도에 대한 설문항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실현 정도에 대해 ‘잘 실현되고 있다’는 응답은 60.8%(매우 2.0% + 어느 정도 58.8%)였으며,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2%(별로 37.3% + 전혀 2.0%)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 응답내용을 분석해 보면, “잘 실현되고 있다”는 응답은 시 지역에서는 84.6%, 군 지역에서는 81.3%로 높은 반면, 구 지역에서는 31.8%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치구의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시·군의 그것보다 협소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소속별로는 “잘 실현되고 있다는 응답은 지방의회 의원은 75.0%,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57.1%,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52.4%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잘 실현되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 시·군 지역에서, 그리고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 근무년수가 높을수록, 구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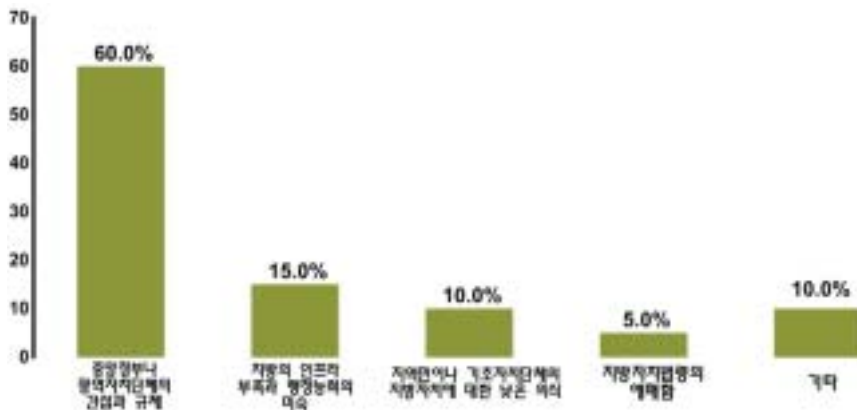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잘 실현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실현되는 편이다	별로 잘 실현되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잘 실현되고 있다□□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	%	%	%	%
□ 전 체 □		(51)	2.0	58.8	37.3	2.0	60.8	39.2
구 분	시	(13)	7.7	76.9	15.4		84.6	15.4
	군	(16)		81.3	18.8		81.3	18.8
	구	(22)		31.8	63.6	4.5	31.8	68.2
소 속	지방의회 의원	(16)		75.0	25.0		75.0	25.0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4)		57.1	42.9		57.1	42.9
	기초자치단체 소속	(21)	4.8	47.6	42.9	4.8	52.4	47.6
성 별	남성	(36)		63.9	36.1		63.9	36.1
	여성	(15)	6.7	46.7	40.0	6.7	53.3	46.7
연 령	20대	(2)		50.0	50.0		50.0	50.0
	30대	(15)		46.7	46.7	6.7	46.7	53.3
	40대	(17)	5.9	52.9	41.2		58.8	41.2
	50대	(12)		75.0	25.0		75.0	25.0
	60대 이상	(5)		80.0	20.0		80.0	20.0
근무년수	4년 이하	(19)		78.9	21.1		78.9	21.1
	4년~8년 이하	(7)		57.1	42.9		57.1	42.9
	8년~12년 이하	(4)		50.0	50.0		50.0	50.0
	12년 이상	(21)	4.8	42.9	47.6	4.8	47.6	52.4

② 지방자치 실현정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유

다음으로 잘 실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간섭과 규제가 6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방의 인프라 부족과 행정능력의 미숙” 15.0%, “지역민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인식” 10.0%, “지방자치법령의 애매함” 5.0%의 순이었으며, 그 밖에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시·군·구 지역 모두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간섭과 규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 기관별로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간섭과 규제’라는 응답이 각각 75.0%와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기초자치단체 소속인 경우 응답이 보기항목별로 고르게 분산되어 나타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계층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간섭과 규제’라는 응답이 대부분의 계층에서 높은 가운데, 구 지역에서는 ‘지방의 인프라 부족과 행정능력의 미숙’과 ‘지역민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의식’ 등의 응답이 일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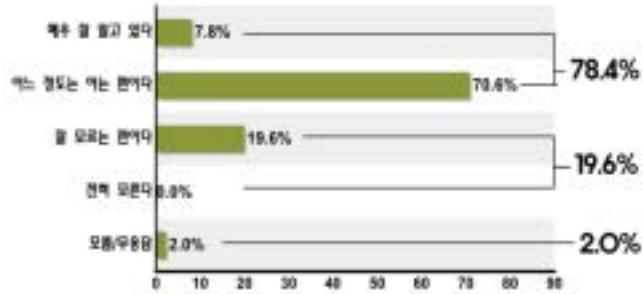
제 3 절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설문조사결과

		사례수	중앙정부나 광역자치 단체의 간섭과 규제	지방자치 법령의 애매함	지방의 인프라 부족과 행정능력의 미숙	지역민이나 기초자치 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의식	기 타
			%	%	%	%	%
□ 전 체 □		(20)	60.0	5.0	15.0	10.0	10.0
구 분	시	(2)	100.0				
	군	(3)	66.7	33.3			
	구	(15)	53.3		20.0	13.3	13.3
소 속	지방의회 의원	(4)	75.0		25.0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6)	100.0				
	기초자치단체 소속	(10)	30.0	10.0	20.0	20.0	20.0
성 별	남 성	(13)	69.2	7.7	7.7	15.4	
	여 성	(7)	42.9		28.6		28.6
연 령	20 대	(1)					100.0
	30 대	(8)	50.0		25.0	12.5	12.5
	40 대	(7)	71.4	14.3		14.3	
	50 대	(3)	66.7		33.3		
	60대 이상	(1)	100.0				
근무년수	4년 이하	(4)	75.0		25.0		
	4년~8년 이하	(3)	33.3				66.7
	8년~12년 이하	(2)	50.0			50.0	
	12년 이상	(11)	63.6	9.1	18.2	9.1	

(2)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도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도를 질문한 결과, ‘잘 아는 편’이라는 응답은 78.4%(매우 7.8% + 어느 정도 70.6%)로 높게 나타나며, ‘모르는 편’이라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제 2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검토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시·군·구 지역 모두 ‘잘 아는 편이다’가 월등히 높은 가운데, 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모르는 편이다’는 응답이 30.8%로 다소 높았다.

소속 기관별로는 ‘잘 아는 편이다’는 응답은 ‘지방의회 의원’ 87.5%,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71.4%, ‘기초자치단체 소속’ 76.2%로 각각 나타났다.

그 밖에 계층별로 살펴보면, ‘잘 아는 편이다’는 응답은 남성, 그리고 근무년수가 4년 이하인 경우 특히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 ‘모르는 편이다’는 응답은 여성, 근무년수 4~8년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는 아는 편이다	잘 모르는 편이다	□□아는 편□□	□□모르는 편□□	모름/무응답	
		%	%	%	%	%	%	
□ 전 체 □	(51)	7.8	70.6	19.6	78.4	19.6	2.0	
구 분	시	(13)		61.5	30.8	61.5	30.8	7.7
	군	(16)	6.3	81.3	12.5	87.5	12.5	
	구	(22)	13.6	68.2	18.2	81.8	18.2	
소 속	지방의회 의원	(16)	6.3	81.3	6.3	87.5	6.3	6.3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4)	14.3	57.1	28.6	71.4	28.6	
	기초자치단체 소속	(21)	4.8	71.4	23.8	76.2	23.8	
성 별	남성	(36)	11.1	72.2	13.9	83.3	13.9	2.8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는 아는 편이다	잘 모르는 편이다	□□아는 편□□	□□모르는 편□□	모름/무응답
			%	%	%	%	%	%
	여성	(15)		66.7	33.3	66.7	33.3	
연 령	20대	(2)		50.0	50.0	50.0	50.0	
	30대	(15)	6.7	66.7	26.7	73.3	26.7	
	40대	(17)	17.6	58.8	23.5	76.5	23.5	
	50대	(12)		83.3	8.3	83.3	8.3	8.3
	60대 이상	(5)		100.0		100.0		
	근무년수	4년 이하	(19)	10.5	84.2	5.3	94.7	5.3
	4년~8년 이하	(7)		28.6	71.4	28.6	71.4	
	8년~12년 이하	(4)		50.0	25.0	50.0	25.0	25.0
	12년 이상	(21)	9.5	76.2	14.3	85.7	14.3	

### (3)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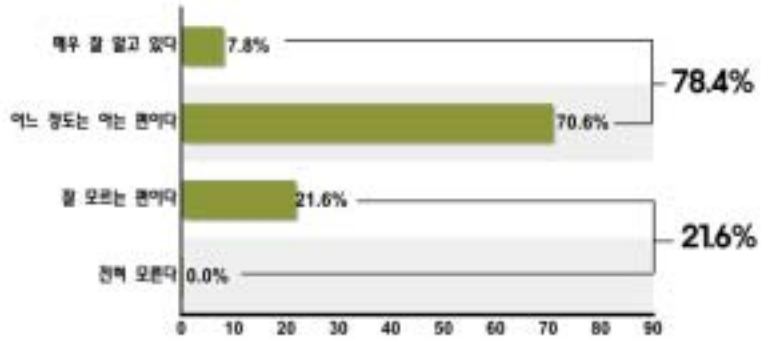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 대한 이해도를 질문한 결과, ‘잘 아는 편’이라는 응답은 78.4%(매우 7.8% + 어느 정도 70.6%)로 높게 나타나며, ‘모르는 편’이라는 응답은 21.6%로 나타남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시, 군, 구 지역 모두 ‘잘 아는 편이다’가 월등히 높은 가운데, 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모르는 편이다’(30.8%)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소속 기관별로는 ‘잘 아는 편이다’는 응답은 ‘지방의회 의원’ 87.5%,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71.4%, ‘기초자치단체 소속’ 76.2%로 각각 고르게 나타났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잘 아는 편이다’는 응답은 남성, 그리고 근무년수가 4년 이하이거나 12년 이상인 경우 특히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 ‘모르는 편이다’는 응답은 여성, 근무년수 4~8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 2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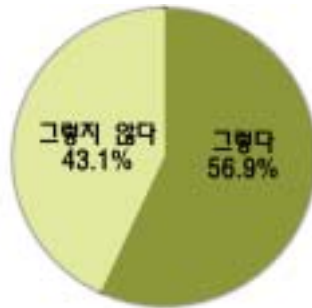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는 아는 편이다	잘 모르는 편이다	□□는 편□□	□□모르는 편□□
			%	%	%	%	%
□ 전 체 □		(51)	7.8	70.6	21.6	78.4	21.6
구 분	시	(13)	7.7	61.5	30.8	69.2	30.8
	군	(16)	6.3	75.0	18.8	81.3	18.8
	구	(22)	9.1	72.7	18.2	81.8	18.2
소 속	지방의회 의원	(16)	12.5	75.0	12.5	87.5	12.5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4)	7.1	64.3	28.6	71.4	28.6
	기초자치단체 소속	(21)	4.8	71.4	23.8	76.2	23.8
성 별	남성	(36)	11.1	72.2	16.7	83.3	16.7
	여성	(15)		66.7	33.3	66.7	33.3
연 령	20대	(2)		50.0	50.0	50.0	50.0
	30대	(15)	6.7	66.7	26.7	73.3	26.7
	40대	(17)	11.8	64.7	23.5	76.5	23.5
	50대	(12)	8.3	75.0	16.7	83.3	16.7
	60대 이상	(5)		100.0		100.0	
근무년수	4년 이하	(19)	10.5	78.9	10.5	89.5	10.5
	4년~8년 이하	(7)		28.6	71.4	28.6	71.4
	8년~12년 이하	(4)	25.0	50.0	25.0	75.0	25.0
	12년 이상	(21)	4.8	81.0	14.3	85.7	14.3



#### (4) 자치입법권의 활용 정도에 대한 이해도

##### ① 자치입법권을 활용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이해도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활용을 통한 조례/규칙 제·개정 여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6.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1%로 그렇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시, 군 지역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61.5%와 75.0%로 우세한 반면, 구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9.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소속별로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16명)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87.5%로 월등히 높은 반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14명)과 기초자치단체 소속(21명)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각 57.1%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계층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근무년수 4년 이하,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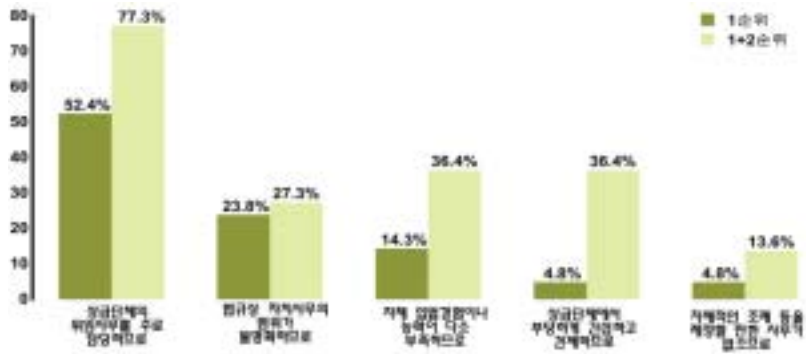
제 2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검토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	%
☐ 전 체 ☐		(51)	56.9	43.1
구 분	시	(13)	61.5	38.5
	군	(16)	75.0	25.0
	구	(22)	40.9	59.1
소 속	지방의회 의원	(16)	87.5	12.5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4)	42.9	57.1
	기초자치단체 소속	(21)	42.9	57.1
성 별	남성	(36)	55.6	44.4
	여성	(15)	60.0	40.0
연 령	20대	(2)	50.0	50.0
	30대	(15)	40.0	60.0
	40대	(17)	52.9	47.1
	50대	(12)	75.0	25.0
	60대 이상	(5)	80.0	20.0
근무년수	4년 이하	(19)	63.2	36.8
	4년~8년 이하	(7)	57.1	42.9
	8년~12년 이하	(4)	50.0	50.0
	12년 이상	(21)	52.4	47.6

② 자치입법권 활용정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활용을 통한 조례/규칙 제·개정 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기초자치단체는 상급단체의 위임사무를 주로 담당하므로’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법규상 자치사무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23.8%, ‘자체 입법경험이나 능력이 다소 부족하므로’ 14.3%, ‘상급단체에서 부당하게 간섭하고 견제하므로’와 ‘자체적인 조례 등을 제정할 만한 사무가 없으므로’라는 응답이 각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설문조사결과



2순위 응답을 포함할 경우에도 ‘상급단체의 위임사무를 주로 담당하므로’가 77.3%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상급단체에서 부당하게 간섭하고 견제하므로’ 36.4%, ‘자체 입법경험이나 능력이 다소 부족하므로’ 36.4%, ‘법규상 자치사무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27.3%, ‘자체적인 조례 등을 제정할 만한 사무가 없으므로’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수	상급 단체의 위임사무를 주로 담당해서	법규상 자치 사무의 범위가 불명확	자체 입법 경험/ 능력이 부족해서	상급 단체가 부당하게 간섭하고 견제해서	자체조례 제정할 만한 사무가 없으므로
			%	%	%	%	%
□ 전 체 □		(21)	52.4	23.8	14.3	4.8	4.8
구 분	시	(5)	40.0	40.0	20.0		
	군	(4)	50.0		25.0	25.0	
	구	(12)	58.3	25.0	8.3		8.3
소 속	지방의회 의원	(2)	50.0	50.0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8)	37.5	25.0	25.0		12.5
	기초자치단체 소속	(11)	63.6	18.2	9.1	9.1	
성 별	남성	(16)	50.0	18.8	18.8	6.3	6.3
	여성	(5)	6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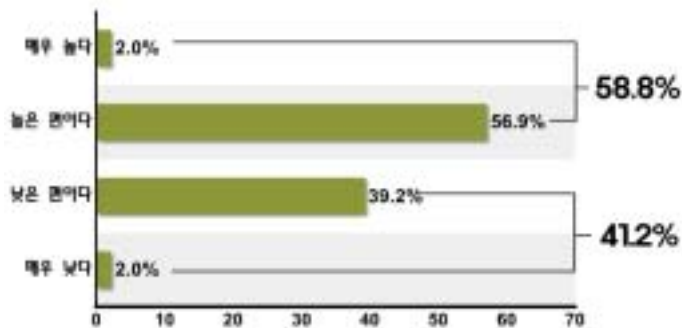
제 2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검토

		사례 수	상급 단체의 위임사무를 주로 담당해서	법규상 자치 사무의 범위가 불명확	자체 입법 경험/ 능력이 부족해서	상급 단체가 부당하게 간섭하고 견제해서	자체 조례 제정할 만한 사무가 없으므로
			%	%	%	%	%
연 령	20대	(1)	100.0				
	30대	(8)	62.5	37.5			
	40대	(8)	37.5	12.5	37.5		12.5
	50대	(3)	33.3	33.3		33.3	
	60대 이상	(1)	100.0				
근무년수	4년 이하	(7)	85.7	14.3			
	4년~8년 이하	(3)	33.3	66.7			
	8년~12년 이하	(2)	50.0		50.0		
	12년 이상	(9)	33.3	22.2	22.2	11.1	11.1

(5) 자치법규의 규범력에 대한 이해도

① 자치법규의 규범력에 대한 이해도

소속된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지역주민 규범력이 ‘높다’는 응답은 58.8%(매우 높음 2.0% + 높은 편 56.9%)였으며, ‘낮다’는 응답은 41.2%(낮은 편 39.2% + 매우 낮음 2.0%)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군, 구 지역의 경우 ‘높다’는 응답이 75.0%와 54.5%로 우세한 반면, 시 지역에서는 ‘낮다’는 응답이 53.8%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별로는 지방의회 의원(16명)의 경우 ‘높다’는 응답이 81.3%로 월등히 높은 반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14명)의 경우 ‘낮다’는 응답이 64.3%로 나타남, 한편 기초자치단체 소속(21명)의 경우 ‘높다’ 57.1%, ‘낮다’ 42.9%로 응답되었다.

계층별로는 ‘높다’는 응답은 여성, 50대 이상, 근무년수 4~8년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며, ‘낮다’는 응답은 40대, 근무년수 8년 이상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례수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input type="checkbox"/> 높 <input type="checkbox"/> 낮	<input type="checkbox"/> 낮 <input type="checkbox"/> 높
			%	%	%	%	%	%
□ 전 체 □		(51)	2.0	56.9	39.2	2.0	58.8	41.2
구 분	시	(13)		46.2	53.8		46.2	53.8
	군	(16)		75.0	25.0		75.0	25.0
	구	(22)	4.5	50.0	40.9	4.5	54.5	45.5
소 속	지방의회 의원	(16)		81.3	18.8		81.3	18.8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4)		35.7	64.3		35.7	64.3
	기초자치단체 소속	(21)	4.8	52.4	38.1	4.8	57.1	42.9
성 별	남성	(36)	2.8	52.8	41.7	2.8	55.6	44.4
	여성	(15)		66.7	33.3		66.7	33.3
연 령	20대	(2)		50.0	50.0		50.0	50.0
	30대	(15)	6.7	46.7	46.7		53.3	46.7
	40대	(17)		47.1	47.1	5.9	47.1	52.9
	50대	(12)		75.0	25.0		75.0	25.0
	60대 이상	(5)		80.0	20.0		80.0	20.0
근무년수	4년 이하	(19)		68.4	31.6		68.4	31.6
	4년~8년 이하	(7)		71.4	28.6		71.4	28.6
	8년~12년 이하	(4)	25.0	25.0	50.0		50.0	50.0
	12년 이상	(21)		47.6	47.6	4.8	47.6	52.4

② 자치법규의 규범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치법규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규범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수혜적 성격의 조례가 많아서’, ‘주민들이 만족해서’, ‘규범이 우선하기 때문에’ 등으로 응답되며, 규범력이 낮은 이유는 ‘주민이해 및 인식 부족’, ‘홍보활동 미흡’, ‘권한이 별로 없어서’ 등으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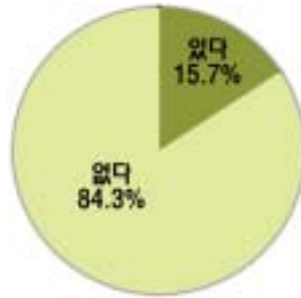
순 위	규범력 높은 이유 (n = 9명)	응답자 수 (명)
1	강제적 성격보다는 수혜적 성격의 조례가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 주민들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2
2	모든 집행시 규범을 우선하므로 / 활동의 지침서이기 때문	2
3	법규를 잘 지키고 이해하는 편이므로 / 지역주민하고 가장 근접하는 규범이므로	2
4	상위법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므로 (특히 주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및 벌금분야)	1
5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을 잘 지키는 편	1
6	홍보를 잘 해서	1

순 위	규범력 낮은 이유 (n = 10명)	응답자 수 (명)
1	주민이해 및 인식 부족	3
2	홍보활동이 미흡해서	2
3	권한이 별로 없어서	2
4	구속력이 법령에 미치지 못함으로	1
5	자체법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기 때문	1
6	조례는 강제성이 없고 규범력이 약해서	1

(6)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와의 갈등 사례

① 상급기관과의 갈등 사례 유·무에 대한 설문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인한 상급기관과의 갈등여부를 질문한 결과, ‘없다’ 84.3%, ‘있다’ 15.7%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는 시·군·구 지역 모두에서 ‘없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군 지역과 구 지역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20%대로 나타나고 있다.

‘있다’는 응답은 소속별로 볼 때, 지방의회 의원(16명) 6.3%,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14명) 21.4%, 기초자치단체 소속(21명) 19.0%로 응답되었다.

그 밖에 계층별로는 ‘있다’는 응답은 30대와 60대 이상, 근무년수 4년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없다’는 응답은 50대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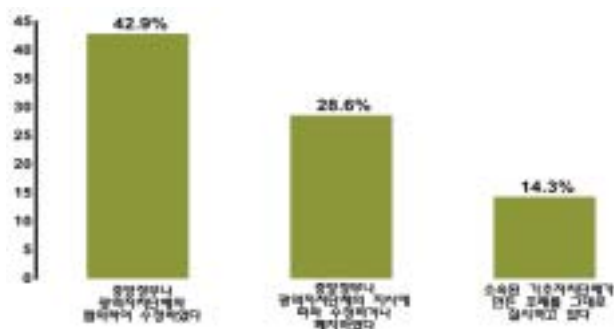
		사례수	있다	없다
			%	%
☐ 전 체 ☐		(51)	15.7	84.3
구 분	시	(13)	23.1	76.9
	군	(16)		100.0
	구	(22)	22.7	77.3
소 속	지방의회 의원	(16)	6.3	93.8

제 2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검토

		사례수	있다	없다
			%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4)	21.4	78.6
	기초자치단체 소속	(21)	19.0	81.0
성 별	남성	(36)	16.7	83.3
	여성	(15)	13.3	86.7
연 령	20대	(2)		100.0
	30대	(15)	20.0	80.0
	40대	(17)	17.6	82.4
	50대	(12)	8.3	91.7
	60대 이상	(5)	20.0	80.0
근무년수	4년 이하	(19)	21.1	78.9
	4년~8년 이하	(7)	14.3	85.7
	8년~12년 이하	(4)		100.0
	12년 이상	(21)	14.3	85.7

② 상급기관과의 갈등 해결 방법

갈등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갈등해결방법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정하였다’는 응답이 42.9%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거나 폐지하였다’ 28.6%, ‘소속된 기초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 14.3%, ‘기타’ 14.3% 등이었다.





제 3 절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설문조사결과

		사례수	상급단체와 협의하여 수정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수정 및 폐지	기초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를 그대로 실시	기 타
			%	%	%	%
☐ 전 체 ☐		(7)	42.9	28.6	14.3	14.3
구 분	시	(13)				
	구	(3)	66.7	33.3		
소 속	지방의회 의원	(1)		100.0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3)	66.7	33.3		
	기초자치단체 소속	(3)	33.3		33.3	33.3
성 별	남성	(6)	50.0	16.7	16.7	16.7
	여성	(1)		100.0		
연 령	30대	(3)	66.7	33.3		
	40대	(3)	33.3		33.3	33.3
	50대	(1)		100.0		
	60대 이상	(3)	33.3	66.7		
근무년수	4년 이하	(1)	100.0			
	4년~8년 이하	(3)	33.3		33.3	33.3
	12년 이상	(4)	25.0	25.0	25.0	25.0

(7) 상급기관과의 중복이나 충돌시 우선 사무처리기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가 중복되거나 경합되었을 때에는 어느 자치단체에서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항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31.4%로 나타났다.

제 2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검토



자치단체별로는 시·군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응답이, 구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응답이 각각 우세했다.

소속별로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16명)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14명)은 ‘기초자치단체’라는 응답이 각각 68.8%, 57.1%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21명)인 경우 ‘광역자치단체’라는 응답이 42.9%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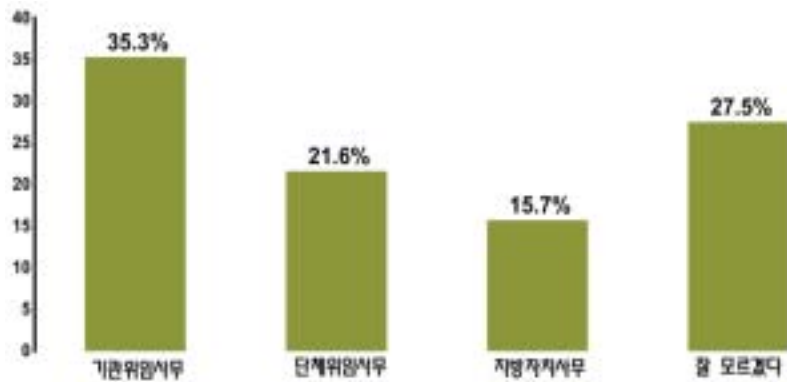
그 밖에 계층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라는 응답은 50대 이상, 근무년수 12년 이상 등에서 높게 나타나며, ‘광역자치단체’라는 응답은 40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례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잘 모르겠다
			%	%	%
□ 전 체 □		(51)	49.0	31.4	19.6
구 분	시	(13)	76.9	15.4	7.7
	군	(16)	50.0	6.3	43.8
	구	(22)	31.8	59.1	9.1
소 속	지방의회 의원	(16)	68.8	31.3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4)	57.1	14.3	28.6
	기초자치단체 소속	(21)	28.6	42.9	28.6
성 별	남성	(36)	52.8	27.8	19.4
	여성	(15)	40.0	40.0	20.0

		사례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잘 모르겠다
			%	%	%
연 령	20대	(2)			100.0
	30대	(15)	46.7	26.7	26.7
	40대	(17)	41.2	41.2	17.6
	50대	(12)	58.3	33.3	8.3
	60대 이상	(5)	80.0	20.0	
근무년수	4년 이하	(19)	52.6	36.8	10.5
	4년~8년 이하	(7)	42.9	14.3	42.9
	8년~12년 이하	(4)	25.0	25.0	50.0
	12년 이상	(21)	52.4	33.3	14.3

(8) 지방자치사무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중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와 중복이 심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한 설문항에 대해서 ‘기관위임사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단체위임사무’ 21.6%, ‘지방자치사무’ 15.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7.5%였다.



자치단체별로는 시 지역에서는 ‘기관위임사무’라는 응답이, 군 지역에서는 ‘지방자치사무’라는 응답이, 구 지역에서는 ‘기관위임사무’와

제 2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검토

‘단체위임사무’라는 응답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별로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기초자치단체 소속 모두에서 ‘기관위임사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사무’라는 응답이 31.3%로 다소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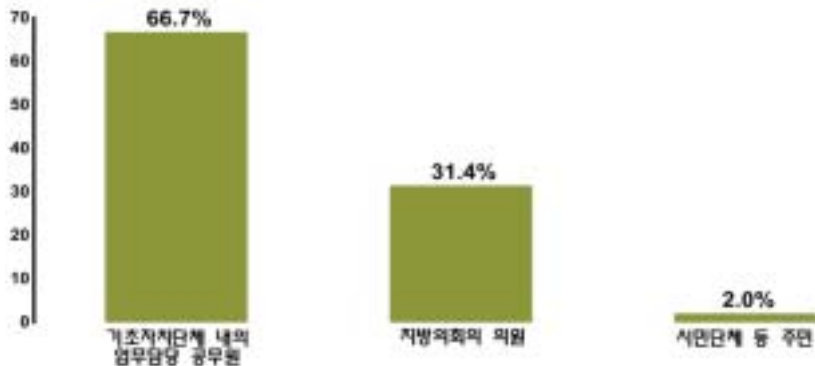
계층별로는 ‘기관위임사무’라는 응답은 30대와 시 지역에서, ‘단체위임사무’는 구 지역에서, ‘지방자치사무’는 50대, 군 지역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례수	기관위임 사무	단체위임 사무	지방자치 사무	잘 모르겠다
			%	%	%	%
□ 전 체 □		(51)	35.3	21.6	15.7	27.5
구 분	시	(13)	61.5	23.1	7.7	7.7
	군	(16)	18.8	6.3	31.3	43.8
	구	(22)	31.8	31.8	9.1	27.3
소 속	지방의회 의원	(16)	37.5	25.0	31.3	6.3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4)	42.9	14.3	7.1	35.7
	기초자치단체 소속	(21)	28.6	23.8	9.5	38.1
성 별	남 성	(36)	38.9	19.4	19.4	22.2
	여 성	(15)	26.7	26.7	6.7	40.0
연 령	20 대	(2)		50.0		50.0
	30 대	(15)	40.0	6.7	6.7	46.7
	40 대	(17)	29.4	29.4	11.8	29.4
	50 대	(12)	33.3	25.0	41.7	
	60대 이상	(5)	60.0	20.0		20.0
근무년수	4년 이하	(19)	36.8	26.3	15.8	21.1
	4년~8년 이하	(7)	14.3	14.3	14.3	57.1
	8년~12년 이하	(4)		25.0	50.0	25.0
	12년 이상	(21)	47.6	19.0	9.5	23.8

(9) 자치입법의 제안 주체에 대한 이해도

자치입법의 제·개정에 대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주민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항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내의 업무담당 공무원’이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방의회의 의원’ 31.4%, ‘시민단체 등 주민’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 계층별로 ‘기초자치단체 내의 업무담당 공무원’이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소속 및 40~50대, 근무년수 12년 이상, 구 지역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방의회의 의원’이라는 응답은 지방의회 의원과 근무년수 4년~12년, 시 와 군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구분	소속	체	사례수	기초자치단체 내의 업무담당 공무원	지방의회의 의원	시민단체 등 주민
			( )	%	%	%
전			(51)	66.7	31.4	2.0
구 분	시	군	(13)	53.8	46.2	
		구	(16)	56.3	37.5	6.3
		구	(22)	81.8	18.2	
소 속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	(16)	62.5	37.5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4)	64.3	28.6	7.1

제 2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검토

	사례수	기초자치단체 내의 업무담당 공무원	지방의회의 의원	시민단체 등 주민	
		%	%	%	
	기초자치단체 소속	(21)	71.4	28.6	
성 별	남성	(36)	66.7	30.6	2.8
	여성	(15)	66.7	33.3	
연 령	20대	(2)		100.0	
	30대	(15)	66.7	26.7	6.7
	40대	(17)	76.5	23.5	
	50대	(12)	75.0	25.0	
	60대 이상	(5)	40.0	60.0	
근무년수	4년 이하	(19)	68.4	31.6	
	4년~8년 이하	(7)	42.9	42.9	14.3
	8년~12년 이하	(4)	50.0	50.0	
	12년 이상	(21)	76.2	23.8	

(10) 자치입법권 활성화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설문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항에 대해서 다음 표와 같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응답내용
각 위원회에서 다양한 연령포함 위원회별 토론이 많이 있어야 함
공무원 인사권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가져야 함
교육을 통한 홍보강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정부에서
많은 홍보를 통한 참여유도

응답내용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량부여
상위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해야 함
실질적 주민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
입법업무를 담당할 기구신설 및 전문가 배치
자치구를 통합하여 일반화
자치입법 교육이나 전문가를 채용, 법률적 기능 강화
자치입법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3.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 (1) 시·군 지역과 자치구 지역간의 인식 차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지역과 자치구 지역간에 지방자치의 실현정도나 자치입법권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의 실현정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자치구의 경우 잘 실현되고 있다는 응답이 31.8%로 시·군지역의 84.6%·81.3%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을 활용한 조례/규칙 제·개정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시·군 지역은 그렇다는 응답이 61.5%와 75.0%로 우세한 반면, 자치구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59.1%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급기관과의 사무 중복이나 충돌시 우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설문에서도 시·군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구 지역에서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군과 자치구 간에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대상이 되는 사무범위가 시·군 지역보다 구 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는 대도시행정의 특성상 자치권이 시·군보다 제약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개발 보다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집행사무를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의 측면에서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실현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 시·군 지역에서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간섭과 규제’를 높게 들고 있는 반면, 구 지역에서는 그 밖에도 ‘지방의 인프라 부족과 행정능력의 미숙’, ‘지역민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의식’에 기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0.0%, 13.3%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어서 사무범위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나 행정능력의 확보 등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자치법무론”의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2)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간의 인식 차이

자치입법권의 활용에 관한 설문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자치입법권의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조례의 규범력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조례의 규범력이 높다고 평가하는 반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다소 높음으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조례의 제·개정이 주로 업무담당 공무원들에 의해서 제안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자치법규 입안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결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3)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 검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또는 개선방안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입법업무를 담당할 기구 신설 및 전문가 배치, 자치입법 교육이나 전문가 채용을 통한 법률적 기능 강화, 자치입법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의견은 자치단체의 입법능력을 지원 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나 재정자립도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정부에서’, ‘자치구를 통합하여 일반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 제 1 절 자치입법의 일반현황

## 1. 자치법규의 운영실태

## (1) 자치법규의 운영현황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말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조례가 41,860건, 규칙이 19,240건이며, 2006년에 비해서 조례가 2,291건, 규칙은 414건 증가하였다.

<표-1>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운영현황(2007.1.1~2007.12.31)

구 분	2006년말 보유①	운영 총계 (②+③+④)	제정②	개정③	폐지④	증 감 ②-④	2007년말 보유⑤
조 례	39,569	10,912	2,775	7,572	484	2,291	41,860
규 칙	18,826	4,254	666	3,369	252	414	19,240

다음으로 <표-2>와 같이 전국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자치구·군과 도의 시·군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권역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보유건수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조례건수가 220.19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광역시 16개 군·구가 130.93건으로 가장 적다.

특별시·광역시별로 자치구간 평균 조례보유건수를 비교해보면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가 평균 160건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이 130.93건으로 가장 적다. 도별로 시·군간 평균조례보유건수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220.19건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188건으로 가장 적다.

대체로 자치구의 평균 조례보유건수는 140건으로 시·군 평균인 201건보다 현저히 적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를 법령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 후문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군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 대해서는 도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넓은 점도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2> 권역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조례보유건수

특별시·광역시		2007년말 조례보유현황	조례보유 평균
서울특별시	25개 구	3,457	138.2
부산광역시	16개 군·구	2,095	130.9
대구광역시	8개 군·구	1,094	136.7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1,505	150.5
광주광역시	5개 구	801	160.2
대전광역시	5개 구	747	149.4
울산광역시	5개 군·구	675	135.0
도			
경기도	31개 시·군	6,826	220.1
강원도	18개 시·군	3,462	192.3
충청북도	12개 시·군	2,345	195.4
충청남도	16개 시·군	3,238	202.3
전라북도	14개 시·군	2,902	207.2
전라남도	22개 시·군	4,475	203.4
경상북도	23개 시·군	4,325	188.0
경상남도	20개 시·군	3,913	195.6

## (2)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 현황

2007년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제정 441건, 개정 1390건, 폐지 126건으로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63.1건의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여 활발한 자치입법활동을 벌였으며,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제정이 207건, 개정이 80건, 폐지가 39건으로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60.5건의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여 그 다음을 잇고 있다. 반면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은 평균 33.3건의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여 자치입법활동에서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lt;표-3&gt; 권역별 기초자치단체 조례 운영현황(2007.1.1~2007.12.31)

구 분	2006년말 보유①	운영 총계 (②+③+④) (시·군·구대비 평균처리비율)	제정②	개정③	폐지④	증감 ②-④	2007년말 보유⑤
<b>총 계</b>	<b>39,569</b>	<b>10,912</b>	<b>2,775</b>	<b>7,572</b>	<b>484</b>	<b>2,291</b>	<b>41,860</b>
서울기초 (25개)	3,243	1,238 (49.5)	238	976	24	214	3,457
부산기초 (16개)	1,989	657 (41.0)	134	495	28	106	2,095
대구기초 (8개)	1,011	267 (33.3)	91	168	8	83	1,094
인천기초 (10개)	1,410	450 (45.0)	110	325	15	95	1,505
광주기초 (5개)	741	188 (37.6)	66	116	6	60	801
대전기초 (5개)	719	262 (52.4)	49	192	21	28	747
울산기초 (5개)	634	199 (39.8)	47	146	6	41	675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구 분	2006년말 보유①	운영 총계 (②+③+④) (시·군·구대비 평균처리비율)	제정②	개정③	폐지④	증감 ②-④	2007년말 보유⑤
경기기초 (31개)	6,511	1,957 (63.1)	441	1,390	126	315	6,826
강원기초 (18개)	3,284	774 (43.0)	226	419	48	178	3,462
충북기초 (12개)	2,177	726 (60.5)	207	80	39	168	2,345
충남기초 (16개)	3,030	771 (48.1)	247	485	39	208	3,238
전북기초 (14개)	2,750	692 (49.4)	185	474	33	152	2,902
전남기초 (22개)	4,201	974 (44.2)	296	656	22	274	4,475
경북기초 (23개)	4,107	771 (33.5)	241	507	23	218	4,325
경남기초 (20개)	3,762	986 (49.3)	197	743	46	151	3,913
제주특별 자치도	319	161	77	22	62	15	334

(3) 주민 조례 제·개폐청구현황

2007년도 주민이 조례제·개폐청구권을 행사한 건수는 총 9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8건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청구된 것이다. 주민 조례 제·개폐청구건수가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되는 이유는 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행정단위이기 때문이며, 청구에 필요한 주민연서수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점도 반영되어 있다.

&lt;표-4&gt; 2007년도 주민 조례제·개폐청구 현황(2007.1.1~2007.12.31)

자치단체	조례명	청구요지	청구결과						
			자진철회	각하	의회결류	수정결결	원안결결	폐기	
<b>총계</b>	<b>9</b>		<b>2</b>	<b>0</b>	<b>1</b>	<b>2</b>	<b>4</b>	<b>0</b>	<b>0</b>
<b>광역</b>	<b>1</b>		<b>0</b>	<b>0</b>	<b>1</b>	<b>0</b>	<b>0</b>	<b>0</b>	<b>0</b>
<b>기초</b>	<b>8</b>		<b>2</b>	<b>0</b>	<b>0</b>	<b>2</b>	<b>4</b>	<b>0</b>	<b>0</b>
구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강동	영유아보육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인위탁시 직접 위탁자가 운영 등					○		
군포시	군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 운영조례안	군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폐지	○						
양주시	양주시 지방공사 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립의료원 설립				○			
연천군	연천군 주민 참여 기본조례	연천군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					○		
청주시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청주시내 학교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농업 발전					○		
광양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자치단체	조례명	청구요지	청구결과					
			자진철회	각하	의회결류	수정결	원안결	폐기
	조례안	시설의 규모를 종전대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조정하여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제한 1천제곱미터미만”을 폐지함						
구례군	구례군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한조례안	주민에 대한 학교급식품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술 및 교육 지원 등 지원 제도화			○			

## 2.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위임법령 현황

법령에서 조례로 일정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 (1)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의한 제한을 요건으로 하는 위임방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대다수의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주로 “대통령령(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는 “대통령령(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조례위임방식은 해당 사무의 성격상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때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임의적인 제한이 부가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방식은 행정규칙으로도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2) 협의 또는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위임방식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제2호에서는 “2.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방식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단체장과 의회 어느 쪽과 협의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점, 협의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sup>9)</sup>

9) 대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는 “협의”의 성격을 “동의”로 보고 있다.



(3)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위임방식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주무부처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위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9조제1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례라 할 수 없다.

법령명	내용	비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7 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 4 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 ④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관리계획조례”라 한	

법령명	내용	비고
	다)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②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법 령 명	내 용	비 고
<p>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p>	<p>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p>	
<p>건축법</p>	<p>제 4 조 (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제 5 조 (적용의 완화)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 6 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 7 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p>	

법령명	내용	비고
	<p>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결핵예방법	<p>제29조 (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③제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경관법	<p>제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3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p> <p>제14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p>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법 령 명	내 용	비 고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④ 지역노사정협의회의 분과 협의회, 사무국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적용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 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 7 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단위·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5 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제28조 (관리 및 처분) 제34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법령명	내용	비고
	제50조 (출자 등의 금지) 제92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공직자윤리법	제21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제76조 (재정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③ 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법 령 명	내 용	비 고
국민건강증진법	<p>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30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p>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p>	

법령명	내용	비고
	<p>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국민연금법	<p>제6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p>	
국민체육진흥법	<p>제 5 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7조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법 령 명	내 용	비 고
	<p>(시행령) 제27조 (대한민국체육상 등)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44조 공동구의 설치·관리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7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14조 운영세칙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116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p>	

법령명	내용	비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서관법	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⑦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법령명	내용	비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p>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p>제11조 (도시녹화계획) ④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2조 (녹지활용계획) 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3조 (녹화계약) ②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p> <p>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41조 (점용료의 징수)</p>	

법령명	내용	비고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⑤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b>군의 조례</b> 로 정한다.	
독립기념관법	제21조의2 (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의 기념관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법 령 명	내 용	비 고
	<p>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방조제관리법</p>	<p>제 3 조의2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결정) ③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는 당해 시·도의,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는 당해 시·군의 조례로서 각각 정한다.</p>	
<p>법제업무운영규정</p>	<p>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제 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p>	
<p>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p>	<p>제38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p>	

법 령 명	내 용	비 고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 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는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 조 (국립수목원 등) ③ 국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수산업법	제91조 (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승인·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법 령 명	내 용	비 고
	<p><b>구의 조례</b>(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어촌·어항법</p>	<p>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p>영유아보육법</p>	<p>제 6 조 (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p>	

법령명	내용	비고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령 명	내 용	비 고
의료급여법	<p>제 6 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p>제 7 조의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제 2 절 자치입법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의 개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에 두는 자치구와 도에 두는 시·군으로 구분된다.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총 수는 230개이며, 조례보유 건수는 41,860건, 규칙보유 건수는 19,240건이다.<sup>10)</sup>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이며,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석·박사과정생 8명을 자치입법조사원으로 위촉하여 각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권역을 구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전수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sup>11)</sup>을 활용하여 1차적으로 조례 및 규칙의 보유여부를 평면적으로 조사하고, 제2차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자치단체별 지역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구 및 면적, 재정, 산업구조, 의회구성 등 일반개황도 조사하였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특례조치로 위임된 권한 및 사무를 실제로 조례로 구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 2. 자치구 및 시·군의 사무범위

### 1) 자치구의 자치권이 미치는 사무의 범위

자치구는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는 달리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자치권이 제한된다. 즉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2에서는 자치구가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10) 행정안전부 통계(2007년 자치법규 운영현황)

11) <http://www.elis.go.kr>

이렇게 자치구의 자치권이 미치는 사무를 제한하는 이유로는 도시 지역인 특별시·광역시의 특성상 면적에 비해 인구밀집도가 높고,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 도시민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자치권의 과도한 제약으로 자치구의 기능이 주로 광역행정의 집행사무나 위임사무에 그치고 있어서 자치단체로서의 존재의의가 미약하다는 우려가 있다.

자치구가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가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9 조 및 별표 2)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 가.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의 인사 교류(6급 이상)
  - 나.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 다.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직장교육은 제외한다)
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 가.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 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 가. 공설묘지·공설 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
4. 청소·오물에 관한 사무
  - 가.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 나. 일반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5. 지방토목·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 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 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 다.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라.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 6.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나. 도시계획지역의 입안
  - 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 라. 도시계획용도지구의 입안
  - 마.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사.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
  - 아.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은 제외)
- 7.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중로(12미터 이상)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관리
- 8.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 가.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
  - 나. 상수도 공채 발행
  - 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 라.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 9.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 가.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나.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 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 10.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 나.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 다.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 라. 공원·유원지·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무
- 마. 공설운동장·체육관·박물관·도서관·미술관·시민회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특별시·광역시 조례로 결정)

11. 지방궐도사업에 관한 사무

- 가. 지방궐도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 나. 지방궐도사업의 설치·운영
- 다. 지방궐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12.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 가. 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 이용에 관한 행정
- 나. 시내버스·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 다. 대중교통수단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무

13.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 가.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 나. 공설시장·도축장·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 다. 유통단지의 지정신청·조성 및 운영 관리
-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14.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시·군의 자치권이 미치는 사무의 범위

시·군의 자치권이 미치는 사무의 범위는 앞에서 살펴본 자치구의 그것보다는 넓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 등이 인

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3)

1. 보건의료에 관한 사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2.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나.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3.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나.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허가

5.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다.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라. 도시계획의 지적승인사무

마.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6.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가.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 나.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 7.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 나.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명령
  - 다.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 라.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 마.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 바. 비산먼지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명령
- 8.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사무
  - 가.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 나.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9.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 가.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일반구역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만 해당한다)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 나. 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한다)계획변경인가
- 10.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무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
- 11. 지적에 관한 사무
  - 가. 토지의 지번경정승인
  - 나.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 다. 축척변경승인
  - 라. 지적측량검사
  - 마.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
- 12. 열 사용 기자재에 관한 사무
  - 열 사용 기자재 제조업의 허가

13. 식품제조업(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업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 가. 허가·변경허가 및 시정명령
  - 나. 시설의 개수명령
  - 다. 폐기처분
  - 라. 허가취소
14.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가.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 나. 묘지·화장장·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 변경과 폐지의 허가
  - 다. 시체운반업의 허가
15.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 수납의 승인
16. 고압가스에 관한 사무
  -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17. 도시가스에 관한 사무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18.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또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3에서 도의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권의 범위가 자치구보다는 더욱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sup>12)</sup>의 경우에는

---

12) 지방자치법 제7조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각종 행정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시·군의 자치권의 범위는 자치구에 비해서 광범위하다.

### 3. 자치구 및 시·군의 자치법규집 편재

#### 1) 자치구의 자치법규집 편재

조례의 편재는 자치단체의 조직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데도 유용하다.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10개 자치구·군의 조례의 편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편 의회	제 5 편 주민생활지원
제 2 편 기획예산	제 1 장 주민생활지원
제 1 장 기획	제 2 장 주민서비스
제 2 장 직제	제 3 장 교육지원
제 3 장 사무위임	제 4 장 경제
제 4 장 예산	제 5 장 환경위생
제 5 장 법무	제 6 장 보건
제 6 장 감사	제 6 편 도시
제 7 장 전산통신	제 1 장 건설
제 3 편 문화체육	제 2 장 건축
제 1 장 공보	제 3 장 도시경관·개발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제 2 장 문화체육	제 4 장 도시계획
제 3 장 관광	제 5 장 교통
제 4 편 자치행정	제 6 장 상하수도
제 1 장 총무	제 7 장 재난안전
제 2 장 인사	제 7 편 읍·면·동·반
제 3 장 급여	제 1 장 읍·면·리
제 4 장 규정·주민자치	제 2 장 통·반
제 5 장 회계	
제 6 장 재산관리	
제 7 장 세무	
제 8 장 민원	
제 9 장 지적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광역시 10개 자치구·군의 자치법규집은 총 7편에 31개 장으로 편재되어 있다. 편재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의회, 자치행정이나 기획예산 등 자치단체의 조직·관리사무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건축·도시경관·교통·상하수도 등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지원·교육지원·경제·환경위생 등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 등에 관한 조례로 구성되어 있다.

편재상으로도 주민의 복지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체계보다는 기관위임사무 또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위한 조례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시·군의 자치법규집 편재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중심으로 시·군의 자치법규 편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편 의회	제 9 편 도시주택
제 2 편 기획감사	제10편 보건소
제 3 편 총무	제11편 농업기술센터
제 4 편 예산 및 재무	제12편 사업소
제 5 편 주민생활지원	제13편 읍·면·동
제 6 편 환경녹지	제14편 재난안전관리
제 7 편 지역경제	제15편 정책사업
제 8 편 건설	제16편 문화공보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자치법규집 편재는 16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자치구의 자치법규 편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나 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편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이나 정책사업을 별도로 편재하고 있는 점 등이 그러하다. 특히 사업소편에서는 판소리 전수관 운영조례, 석장리 박물관 운영조례와 같이 지역의 문화·역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거나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지역의 자연적 환경과 산업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들이 주목할 만하다.

###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 1. 조사개요

여기서는 인천광역시 10개 자치구·군의 자치입법 실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 8개의 자치구와 2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치구와 군(郡)간에 사무배분의 차

이를 비교하기가 용이하다.

## 2. 지방의회 관련 자치입법의 실태

지방의회 관련 조례들은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실태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대부분 지방자치법 등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성이나 독자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의회포상조례·의회포상규칙과 같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자치단체와 규칙으로 규정하는 자치단체가 병존하고 있는 등 조례규율사항과 규칙규율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점이 자치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관련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의회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눈에 띄었으나, 인천광역시 10개 구·군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에서도 의정자문단 또는 의정자문위원회 등과 같은 간접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이외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방의회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특색있는 조례로는 “용진군 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sup>13)</sup>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증인 불출석이나 증언 거부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용진군에서는 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해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차등적

13) 지방자치법 제42조 제5항에서는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으로 부과하기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조례제정은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부과범위에 대한 입법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

조례명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제 1 편 의 회										
의회 회의 규칙	○	○	○	○	○	○	○	○	○	○
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의회 위원회 조례	○	○	○	○	○	○	○	○	○	○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의회 공인조례	○	○	○	○	○	○	○	○	○	○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	○	○	○	○	○	○	○	○	○
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	○	○	○			○	○	○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	○	○	○	○	○	○	○
<b>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정수 조례</b>										○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의회 청원심사 규칙	○	○	○	○	○	○	○	○	○	○
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	○	○	○	○	○	○	○	○
의회 포상 조례	○	○	○		○			○		
의회 포상 규칙				○			○			○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	○	○	○	○	○	○	○
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		○	○	○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	○	○	○	○	○	○	○	○	○	○

14) 옹진군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경북 포항시, 고령군이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 거제시와 하동군에서는 “의회 행정감사 조사 위반자 과태료 부과정수규칙”을 두고 있다.

조 례 명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범에 관한 조례										
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		○	○	○			
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	○	○	○	○	○	○		○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의회기에 관한 조례									○	
의회기에 관한 규칙		○		○	○	○		○		
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	○	○	○		○		
의회 의원 공무국의여행규칙	○	○	○	○	○	○	○	○	○	○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	○	○	○	○	○	○	○	○
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	○	○	○		○	○		○
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
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	○	○		○	
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						
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			○		○					
중구 의회 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조례	○									
남동구 의정 읍부즈맨 운영 조례					○					
옹진군 간행물 심의위원회 조례										○

### 3. 기획예산 관련 자치입법의 실태

기획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제1장 기획, 제2장 직제, 제3장 사무위임, 제4장 예산, 제5장 법무, 제6장 감사, 제7장 전산통신의 7개 장으로 편제되어 있다. 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제16조의 주민의 감사청구권의 요건이 되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하는 조례 등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자치단체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 특색 있는 조례로는 동구의 “구민참여기본조례”이다.<sup>15)</sup> 이 조례는 “구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구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버넌스행정의 전형을 조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sup>16)</sup>

또한 이 조례에서는 구민참여를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구민이 협동하는 것(제2조제1호)”이라고 정의하면서 구청장,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각각 정하고 있다. 나아가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의공개 원칙(제6조), 위원회에의 구민참여(제7조), 예산편성의 구민참여(제8조) 뿐만 아니라 구정정책토론 청구제(제9조) 등 다양한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정정책토론 청구제도<sup>17)</sup>는 종래의 주민참여예산제<sup>18)</sup>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민이 직접 구의 중요정책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토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

15) 조례 가운데 “기본조례”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본법”과 같이 기본조례의 경우에도 일정한 정책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자치기본조례” 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때 “자치기본조례”의 법적 성격을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다.

16) 구민참여기본조례와 유사한 조례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가 있다. 이 조례는 구민참여기본조례와 유사하면서 구청장에게 참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17)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최환용, 전게서, p.141 참조

18)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운대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덕구 등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b>제 2 편 기획예산</b>										
<b>제 1 장 기 획</b>										
구(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	○	○				○	○	○
구(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	○				○	○	○
구(군)정 발전자문위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						○				
기획업무규칙									○	○
◎ 정책관련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	○	○	○	○	○	○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제안제도 운영조례/시행규칙			○							
시(군) 제안규칙					○			○	○	○
공무원 제안규칙	○	○	○			○				
구민 제안규칙		○								
<b>구민 참여 기본조례</b>		○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	○							○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			○		○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	○	○	○	○	○	○	○	○	○
사이버 모니터 운영 조례						○				
중구 21세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남구 함께 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연수구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평구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서구 21C 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용진군 덕진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
<b>제 2 장 직 제</b>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	○	○	○	○	○	○	○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b>제 3 장 사무위임</b>										
사무위임 조례/규칙	○	○	○	○	○	○	○	○	○	○
사무전결처리 규칙	○	○	○	○	○	○	○	○	○	○
사무인계인수규칙	○	○	○	○	○	○	○	○	○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	○	○	○	○	○	○	○	
<b>제 4 장 예 산</b>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	○	○	○	○	○	○	○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			○			○		○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	○	○	○	○	○	○	○	○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						○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	○			○			○		○
예산성과급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		○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		○	○	○	○	○
예산성과급 자체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					
기금관리 기본조례							○	○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			○	○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				○	○	○	○	○	○
<b>제 5 장 별 무</b>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	○	○	○	○	○	○	○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	○	○		○	○	○	○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			○	○		○
소송사무처리규칙	○	○	○	○	○	○	○	○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	○	○	○	○	○	○	○	○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	○	○	○		○	○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	○	○		○	○	○	○	○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					
법제사무처리규칙	○	○			○	○	○	○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조례	○	○	○	○	○			○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	○	○		○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	○	○		○					
<b>제 6 장 감 사</b>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자체감사규칙	○	○	○	○	○	○	○	○	○	○
일상감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					○				
주민감사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	○	○	○	○	○	○	○	○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		○		○	○	
관용심사운영절차에 관한 규칙		○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	○		○	○	○	○	○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b>제 7 장 전산통신</b>										
지역정보화촉진조례	○	○	○	○	○	○	○	○	○	○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	○		○	○	○	○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규칙										○

#### 4. 문화체육 관련 자치입법의 실태

문화체육과 관련한 자치입법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색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체육과 관련한 조례에서는 문화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이 분야에서도 자치사무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일정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더불어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자치입법체계로는 문화체육의 진흥과 이를 관광으로 연결시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엇보이나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현재 이 분야에서의 자치입법 실태는 현재진행형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광분야에 관한 자치입법은 자연환경이 뛰어난 강화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용료 등을 징수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이를 자치입법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웅 진 군
<b>제 3 편 문화체육</b>										
<b>제 1 장 공 보</b>										
구(군)보조례	○	○	○	○	○	○	○	○		
구(군)보 발행규칙									○	○
구(군)사 편찬위원회 조례				○			○	○		○
구(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					○
구(군)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구(군)정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	○			
기록관 운영 규칙		○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	○
◎ 광고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광고 및 광고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연수구 반상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b>제 2 장 문화체육</b>										
◎ 문화										
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				○	○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구(군)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규칙		○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	○		○	○	○	○
문화회관 사용조례							○	○	○	
문화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	○	
문화회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시행규칙						○				
한중문화관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규칙							○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물 설치 조례									○	○
◎ 체육지원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		○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청소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	
구(군)민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공원운동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			○	○	○			
동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시행규칙		○								
연수구 구 체육공원 내 공도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연수구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						
연수구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남동구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		
용진군 카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시행규칙										○
<b>제 3 장 관 광</b>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 문화재										
지방유형문화재 관리 및 사용 조례									○	
박물관(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향토유적지 보호 조례									○	○
동구 수도권산달동네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화군 역사관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관광산업										
관광지 관리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축제지원조례						○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축(전)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계양구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			
서구 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 관리조례								○		
강화군 고인돌 문화축전 운영조례									○	
강화군 전적지 관람료 징수 조례									○	
강화군 마니산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	
강화군 함허동천 시범양영장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	
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강화 평화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조 례 명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용진군
강화군 풍물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강화군 풍물시장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	
강화군 토산품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시행규칙									○	
강화군 화문석 문화관 운영 관리 조례									○	
강화군 동막해변 공영사위장 및 탈의장 등 사용료 징수 조례									○	
용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용진군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관한 조례										○

### 5. 자치행정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자치행정에 관한 자치입법은 총무, 인사 및 급여, 회계, 재산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의 조례는 자치단체 내부의 업무처리나 공무원의 복무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조례가 대부분이다.

조 례 명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용진군
<b>제 4 편 자치행정</b>										
<b>제 1 장 총 무</b>										
구(군)기조례	○	○	○	○	○	○	○	○	○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상징물 및 상표권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구(군)민의 날 조례	○	○	○	○	○	○	○	○	○	○
군민헌장조례									○	○
구(군)민상 조례	○	○		○	○	○	○	○	○	○
구(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	
명예 구(군)민증 수여 조례						○		○	○	
구(군)민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 조례							○	○		
공인조례	○	○	○	○	○	○	○	○	○	○
공인조례 시행규칙	○	○	○	○	○	○	○	○	○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	○	○	○	○	○	○	○	○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	○	○	○	○	○	○	○	○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	○	○	○	○	○	○	○	○
포상조례	○	○	○	○	○	○	○	○	○	○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	○		○			○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강당운영 관리조례					○		○			
서구 구정발전유공표창 운영 규칙								○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			○	○	○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시행규칙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용진군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용진군 지방직영기업 설치조례										○
용진군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
<b>제 2 장 인 사</b>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	○	○	○	○	○	○	○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	○	○	○	○	○	○	○	○	○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규칙			○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	○	○	○	○	○	○	○	○	○	○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	○	○	○	○	○	○	○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	○		○	○	○	○	○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			○	○
청원경찰 징계규칙	○	○	○	○	○	○	○		○	○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			○		
<b>제 3 장 급 여</b>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	○	○	○	○	○	○	○	○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	○	○	○	○	○	○	○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									
시험수당 지급조례	○	○	○	○	○	○	○	○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	○	○	○	○	○	○	○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	○	○	○	○	○	○	○	○	○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	○	○	○	○	○			○	○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			
공수의 여비조례									○	
부업대학생 실비변상조례									○	
<b>제 4 장 규정·주민자치</b>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	○		○	○	○	○	○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	○	○	○	○	○	○		
행정서비스 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행정서비스 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	○	○	○	○	○	○	○	○	○
주민투표 조례	○	○	○	○	○	○	○	○	○	○
부평구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b>제 5 장 회 계</b>										
재무회계 규칙	○	○	○	○	○	○	○	○	○	○
보조금관리조례	○	○	○	○	○	○	○	○	○	○
보증채무관리 조례	○	○	○	○	○	○	○	○	○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규칙	○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	○	○	○	○	○	○	○	○	○
<b>제 6 장 재산관리</b>										
물품관리조례	○	○	○	○	○	○	○	○	○	○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	○	○	○	○	○	○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	○	○	○	○	○	○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	○	○	○	○	○	○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시행규칙				○						○
관용차량 관리규칙	○	○	○	○	○	○	○	○	○	○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구 사계절 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서구 사계절 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서구 서원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		
<b>제 7 장 세 무</b>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구(군)세조례	○	○	○	○	○	○	○	○	○	○
구(군)세 부과 징수 규칙	○	○	○	○	○	○	○	○	○	○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	○	○	○	○	○	○	○	
지방수입부과공개에 관한 규칙		○					○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	○	○			○		
구(군)세 감면조례	○	○	○	○	○	○	○	○	○	○
구(군)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	○	○	○	○	○	○	○	○
구(군)세심의위원회 등 운영규칙	○	○		○		○	○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규칙			○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	○	○	○	○	○	○	○	○
수입증지조례	○	○		○	○	○	○	○	○	○
수입증지조례 시행규칙								○		
금고지정(선정) 및 운영조례	○	○	○	○	○	○	○	○	○	○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금권 등의 관리 규칙	○	○	○	○	○	○	○	○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									○	○
<b>제 8 장 민 원</b>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	○		○	○	○	○	○	○	○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				○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 조례										○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	○	○	○		○			○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	○	○	○	○	○		○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	○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계양구 친절 으뜸 공무원 포상운영규칙							○			
<b>제 9 장 지 적</b>										
구(군) 지명위원회 조례	○	○	○	○	○	○	○	○	○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규칙	○	○	○	○	○	○	○	○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	○	○	○	○	○	○	○	○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	○	○	○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	○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규칙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규칙									○	

## 6.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자치입법은 주로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보건·환경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가 다수 조사되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자치입법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

으며, 공단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자치입법도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와의 사무배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로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은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같은 지원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무는 재정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농축산업, 해양수산업 등에 관해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관련 자치법규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자치구의 사무보다 군의 사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같은 자치입법이 조사되었다.

보건·환경분야에서는 주로 폐기물처리 등과 같은 위임조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조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조례명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제 5 편 주민생활지원										
제 1 장 주민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		○		○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								○	
동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규칙	○								○	○
의료(보호)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	○		○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저소득층 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 운영 조례	○	○	○	○	○	○	○	○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		○	○	○	○	○	○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		○	○	○	○	○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	○	○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 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	○	○				
이재민 특별 전세자금 지원사업 자금 운영 관리조례			○	○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시행규칙									○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				○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				
취업 규칙		○				○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보상 조례/시행규칙	○									
제 2 장 주민서비스										
◎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				○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노인복지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				○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시행규칙								○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					○			○	○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	○	○	○			○	○	○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 청소년복지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			○	○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			○	○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	○									
청소년 육성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	○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	○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	○	○	○	○	○	○	○	○
◎ 여성·아동복지										
여성발전 기본조례								○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	○
신생아 출산 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에 관한 조례			○							
출산·입양 축하금(장려금) 지원 조례		○		○	○	○		○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									
영유아 보육 조례	○	○	○	○	○		○	○		○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	○	○			○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 기타 주민서비스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										○
강화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	
제 3 장 교육지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	○	○	○	○	○	○	○	○
평생교육조례								○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	○	○	○				
외국어교육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	○	○	○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어린이 도서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									○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 3 장 경 제										
◎ 지역경제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	○	○							
지방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공설시장 설치 조례									○	
시장 사용 조례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		○	○	○	○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조례		○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	○		○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규칙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			○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전자지도의 광고 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기업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	○		○		
노동 복지회관 운영조례/시행규칙							○			
◎ 농축산업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지역 명품 개발 육성 조례										○
농·특산물 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시행규칙									○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농업과학기술 특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농공기술 훈련소 조례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규칙									○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	○							○		
기계류 관리 조례									○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농기계 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	○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					
강화약쭈 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해양수산										
어항관리조례	○									○
연안항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칙										○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수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조례/시행규칙					○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시행규칙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제 4 장 환경위생										
◎ 환경										
환경기본조례		○				○		○		
자연환경보전조례									○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 청소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	○	○	○	○	○	○	○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	○	○		○	○	○		○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	○	○	○	○	○	○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	○	○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 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 위생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 규칙	○	○	○	○	○	○	○	○	○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	○	○	○	○	○	○	○	○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							
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장 보 건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	○	○	○	○	○	○		○	○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								○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		○	○		○	○	○
의료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		○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					○	○	○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		○	○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	○	○	○	○	○	○		○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	○	○	○	○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징수 조례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용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시행규칙										○

### 7. 도시관리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도시관리에 관한 자치입법은 건설, 건축, 도시경관, 도시계획, 교통, 재난안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관리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광역시의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심의위원회의 설치조례나 부담금·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만의 독특한 자치입법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기관위임사무가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율한 경우와 규칙으로 규율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또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사무범위가 군보다 협소하기 때문에 군급 자치단체만의 자치입법이 다수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제 6 편 도 시										
제 1 장 건 설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 건설행정										
부실공사 방지조례	○		○			○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	○			
관용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시행규칙										○
골재위탁판매에 관한 조례									○	
◎ 도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		○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	○	○		○				○	○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시(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
<b>도로점용료 징수 조례</b>									○	○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	○	○	○	○	○	○	○	○	○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시행규칙	○		○	○	○	○	○	○	○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						
◎ 농촌개발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	
농업생산기반시설 외 목적 외 사용료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징수 조례										
수리계 관리 조례									○	○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 공업단지 개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						○			
<b>제 2 장 건 축</b>										
건축조례		○							○	○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	○		○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	○	○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	○	○		○	○	○	○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규칙			○	○	○		○	○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b>제 3 장 도시경관·개발</b>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	○	○	○	○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	○	○	○	○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용자관리조례	○									
중구 월미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b>제 4 장 도시계획</b>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	○	○	○	○	○	○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도시계획도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					
도시계획만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					
도시계획서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					
도시계획장수지구 토지수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					
도시계획동양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			
도시계획굴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			
도시계획장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			
도시계획살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			
도시계획검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		
도시계획검암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시행규칙								○		
도시계획검암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		
도시계획경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시행규칙								○		
도시계획연희1·2·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		
◎ 균형발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 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b>제 4 장 교 통</b>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	○	○		○	○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	○	○	○	○	○	○	○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시행규칙	○	○	○	○	○	○	○	○	○	
견인자동차 운영(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주정차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b>제 6 장 상하수도</b>										
지하수 관리 조례		○	○	○	○	○	○	○	○	○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								○	
개인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b>제 7 장 재난안전</b>										
◎ 재난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								○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시행	○	○	○	○	○	○	○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규칙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	○	○	○	○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	○	○	○	○	○	○	○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	○	○	○	○	○	○	○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민방위										
수방단 운영 조례		○								
민방위 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 하천방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	○

### 8. 읍·면·동·반에 관한 자치입법

이 분야는 기초자치단체의 하부행정단위인 읍·면·동·반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자치입법 또한 조직법적 성격이 대다수이고, 작용법적 성격을 가진 자치입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제 3 절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중 구	동 구	남 구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서 구	강 화 군	용 진 군
<b>제 7 편 읍·면·동·반</b>										
제 1 장 읍·면·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	○	○	○	○	○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
읍면리 순서 규정									○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	○	○	○	○	○	○	○		
리장 정수 조례									○	○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	○
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명예 읍면장 조례									○	
리 직제규칙									○	
리 개발위원회 조례									○	○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
반 설치 조례									○	○
반 운영 규칙									○	○
용진군 송림면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
<b>제 2 장 통·반</b>										
통, 반 설치조례	○	○	○	○	○	○	○	○		
통,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	○	○	○	○	○	○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	○	○	○	○	○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	○	○	○	○	○	○		
<b>제 3 장 새마을운동</b>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		

### 제 4 절 시 · 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 1. 조사개요

여기서는 충청남도 16개 시 · 군을 중심으로 자치입법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각 기초자치단체의 일반 개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 역	인구(단위: 명) 및 면적(단위:km <sup>2</sup> )	재정(자립도) -08년 기준	산업구조 (종사자 수 기준)	의회구성여부 (의원 수)
계룡시	인구 - 41,702 (09.1월) 면적 - 60.73	20.4%	농업 및 임업	구성(7인)
공주시	인구 - 128,573(09.2월) 면적 - 940.50	17.5%	제조업	구성(12인)
금산군	인구 - 58,583(07.12월) 면적 - 576.28	21.0%	제조업	구성(8인)
논산시	인구 - 130,114 (08.12월) 면적 - 554.83	16.3%	제조업	구성(10인)
당진군	인구 - 139,421 (08.12월) 면적 - 664.73	37.0%	농어업	구성(12인)
보령시	인구 - 106,824 (09.1월)	21.7%	농어업	구성(12인)

## 제 4 절 시·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지 역	인구(단위: 명) 및 면적(단위:km <sup>2</sup> )	재정(자립도) -08년 기준	산업구조 (종사자 수 기준)	의회구성여부 (의원 수)
	면적 - 568.94			
부여군	인구 - 77,007 (09.3월) 면적 - 624.6	13.7%	제조업	구성(11인)
서산시	인구 - 158,880 (09.4월) 면적 - 739.48	32.2%	제조업	구성(13인)
서천군	인구 - 61,168 (07.12월) 면적 - 358.00	12.4%	제조업	구성(9인)
아산시	인구 - 254,143 (09.3월) 면적 - 542.17	53.9%	제조업	구성(14인)
연기군	인구 - 81,450 (07.12월) 면적 - 361.38	23.4%	제조업	구성(10인)
예산시	인구 - 89,738 (07.12월) 면적 - 542.3	18.0%	제조업	구성(11인)
천안시	인구 - 546,469 (09.4월) 면적 - 636.25	54.0%	제조업	구성(20인)
청양군	인구 - 33,456 (09.12월) 면적 - 479.67	15.2%	제조업	구성(8인)
태안군	인구 - 63,443 (07.12월) 면적 - 504.94	21.7%	숙박 및 음식점업	구성(8인)
홍성군	인구 - 89,231 (08.12월) 면적 - 418.66	22.9%	도소매업	구성(10인)

충청남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우며, 공주·부여의 백제문화권과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안관광지, 당진항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는 천안시, 아산시가 겨우 50%를 넘었을 뿐 30%를 넘는 지역이 당진군, 서산시 2곳이고 나머지 지역은 겨우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지역이 많으나 주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나머지 지역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 2. 지방의회 관련 자치입법 실태

지방의회 관련 시·군의 자치입법 실태는 자치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거의 동일하다.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특색있는 조례로는 홍성군의 “의회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이다.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 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교수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심의, ③ 집행부와 군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④ 주요군정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⑤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대안 제시, ⑥ 군의회의장이 요청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제의 검토 및 시행중인 사업의 분석·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 4 절 시·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b>제 1 편 의 회</b>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	○	○	○		○	○		○	○		○	○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		○		○				○		○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의회공인조례	○	○	○	○	○	○	○	○	○	○	○	○	○	○	○	○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	○	○	○	○	○	○	○	○	○	○	○	○	○	○	○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의회위원회조례	○	○	○	○	○	○	○	○	○	○	○	○	○	○	○	○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	○			○	○	○	○	○	○					○
의회의원신분증규칙	○	○	○	○	○	○	○	○	○		○	○	○	○	○	○
의회청원심사규칙	○	○	○	○	○	○	○	○	○		○	○	○	○	○	○
의회포상규칙	○	○		○		○		○		○		○				
의회회의규칙	○	○	○	○	○	○	○	○	○	○	○	○	○	○	○	○
의회회장규칙	○	○				○		○		○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	○	○	○			○	○						○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	○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변상 조례					○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	○		○	○					
의회진정서 등 처리 규칙						○										
의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						○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의회 의정자문 조례								○		○						
의원 공무국의연수 및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의회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 3. 기획감사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기획감사에 관한 시·군의 자치입법 실태 또한 대부분이 위임조례 또는 위임규칙으로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자치입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자치구의 기획감사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와 비교해 보면, 시·군의 자치입법이 보다 광범위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의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자치입법들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천군의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첨단산업단지과 연구시설 등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엿보이는 조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당진군의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치법규의 입안시 유의사항, 자치법규안 심사절차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것이다.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b>제 2 편 기획감사</b>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보조금 관리 조례	○	○	○	○	○	○	○	○	○	○	○	○	○	○	○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		○	○	○	○	○		○		○		○	○	○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		○		○	○	○	○	○	○					○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	○	○	○	○	○	○	○	○	○	○	○	○	○	○	○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	○	○	○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												○
고문변호사 조례	○	○	○	○	○	○		○	○	○	○	○	○	○	○	○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		○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	○	○	○	○	○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 조례	○	○	○	○	○	○	○	○	○	○	○	○	○	○	○	○
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	○	○	○	○	○	○	○	○	○	○	○	○	○	○	○
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			○			○		○		○			○
자체감사 규칙	○	○		○	○	○	○	○	○	○	○	○	○	○	○	○

제 4 절 시 · 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	○		○	○	○				○			○	○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		○		○					○	○				○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						○		○		○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시행규칙	○	○											○			
정책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	○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	○	○		○			○	○		○	○			○
조례·규칙심의회운영 규칙	○			○	○	○	○	○	○			○				○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											○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					
기획업무 규칙		○	○	○	○		○		○	○		○	○	○	○	○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		○	○	○	○	○	○	○	○	○	○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	○	○	○	○	○	○	○	○	○	○	○	○	○	○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상징물 관리 조례		○	○		○			○	○		○				○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						○	○			○			○	○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	
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방행정동우회지원 조례		○	○	○	○		○	○			○				○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		○	○		○	○		○		○				○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		○	○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칙			○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b>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b>					○		○	○							○	
고향사랑자문관 운영 조례						○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 조례						○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						○										
프로젝트팀 설치 운영 조례						○		○								
프로젝트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							○									
서산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선거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운영 규칙								○								
나라사랑공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	○						
<b>민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b>								○								
개발공사 설립 조례									○							
어메니티서천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공무원관용심사 처리 규칙									○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정비 조례/시행규칙									○							
직소민원 처리 및 상담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안제도 운영 조례										○			○			
시정백서 발간 규칙										○						
조례 일괄개정 조례										○						
규칙 일괄개정 규칙										○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제명 표기 등에 관한 조례											○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애향장학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관리 조례 시행규칙														○		

#### 4. 총무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이 분야 또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가 대부분으로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나 규칙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와 비교해 보면, 시·군의 경우가 보다 다양한 사항을 조례로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b>제 3 편 총 무</b>																
시·군민대상 조례	○		○	○	○		○	○		○	○	○	○	○	○	
시·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	○	○		○	○		○	○	○			○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		○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	○	○	○	○	○	○	○	○	○	○	○	○	○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	○	○	○	○	○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		○			○		○	○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	○							○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명예 시·군민증 수여 조례	○	○	○	○		○	○	○	○	○		○	○			○
명예 시·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	○	○	○	○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	○	○	○	○	○	○	○	○	○	○	○	○	○		○
사무위임 조례	○	○	○	○	○	○	○	○	○	○	○	○	○			
사무위임 규칙		○	○	○	○	○	○	○		○	○	○	○			
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재무회계 규칙	○	○	○	○	○	○	○	○	○	○	○	○	○	○	○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	○	○	○	○	○	○	○	○		○	○	○	○	○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	○	○	○	○	○	○	○	○	○	○	○	○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	○	○	○	○	○	○	○	○		○	○	○	○	○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	○	○	○	○	○	○	○	○		○	○	○	○	○

제 4 절 시 · 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	○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	○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	○	○	○	○	○			○		○	○	○		○	○	○
공무원당직수당지급 조례	○	○	○	○	○	○		○		○		○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	○	○	○	○	○
공인 조례	○	○	○	○	○	○	○	○	○	○	○	○	○	○	○	○
관용차량관리 규칙	○	○	○	○	○	○	○	○	○	○	○	○		○	○	○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	○	○	○	○	○	○	○	○	○	○	○	○	○	○
리·통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	○	○	○	○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	○	○	○	○	○	○	○	○		○	○	○	○	○	○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	○	○	○	○	○	○	○	○		○	○		○	○	○
사무인계인수 규칙	○	○	○	○	○	○	○	○	○	○	○	○	○	○	○	○
시·군민헌장 조례	○	○	○	○	○	○	○	○	○	○			○	○		
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	○		○	○				○	○	○	○	○		○	○	○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제안 규칙	○	○	○	○	○	○	○	○	○			○	○	○	○	○
주민투표 조례	○	○	○	○	○	○	○	○	○	○	○			○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 규칙	○	○	○	○		○	○	○	○	○		○	○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 규칙	○	○	○	○	○	○	○	○	○	○		○	○	○	○	○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	○			○	○	○	○	○				○	○	○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	○	○	○	○	○	○	○	○	○	○	○	○	○	○	○
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포상 조례	○	○	○	○	○	○	○	○		○	○	○	○	○	○	○
포상 조례 시행규칙														○		
회계 관계 공무원재정보증 조례	○	○	○	○	○	○	○		○	○	○	○	○	○	○	○
웅진문화상 조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	○	○	○		○	○	○	○	○	○	○	○	○	○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				○	○	○				○				
청원경찰 복무 규칙		○	○		○	○	○		○	○	○	○			○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		○		○	○					○			○	○		
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	○		○	○	○	○	○	○	○			○	○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	○	○	○		○		○	○	○	○	○	○		○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										
보증채무 관리 조례		○	○	○	○	○		○	○	○	○	○	○	○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	○	○		○	○			○	○	○	○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		○						○		○	○	○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규칙			○	○					○		○			○	○	○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								○	○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 조례			○	○	○		○	○	○						○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				○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				○		○										
시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사랑운동실천지원 조례				○					○							

제 4 절 시·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례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장학회지원 조례				○		○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시행규칙				○												○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		○	○	○	○		○		○		○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			○				○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	○								○		○
분쟁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											○	○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행정정보공개 조례					○				○	○						
시험수당지급 규칙					○			○								
민원봉사실장수당지급 규칙					○											○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						○					○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											
내 고장 주민등록갯기운동 추진 위원회 조례					○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		○		○		○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	○	○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이장의 수당지급 및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									○							
새서천대상 운영 규칙									○							
서천사랑장학회 지원 조례									○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						
대강당 대관 및 운영 조례										○						
명예시장제 운영 규칙										○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시행규칙										○						
기록관 운영 규칙										○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규칙											○					
인터넷정보시스템운영규칙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자료관 운영 규칙														○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	
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 관한 조례																○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
<b>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b>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자율방법 활동 지원 조례																○

## 5. 예산 및 재무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예산 및 재무분야의 자치입법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자치재정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시·군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예산 및 재무 분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지방세(시·군세 조례, 시·군세 감면조례)와 관련된 자치입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치구와 커다란 차이를 가진다.

또한 예를 들면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지방세의 충실한 징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규범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조례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b>제4편 예산 및 재무</b>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	○	○	○		○	○	○	○	○	○	○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	○	○	○	○	○	○	○	○	○	○	○	○	○	○	○
<b>시·군세 감면 조례</b>	○	○	○	○	○	○	○	○	○	○	○	○	○	○	○	○
시·군세 부과 징수 규칙	○	○	○	○	○	○	○	○	○	○		○	○	○	○	○
시·군세 조례	○	○	○	○	○	○	○	○	○	○	○	○	○	○	○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	○	○	○	○	○	○	○	○	○	○	○	○	○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규칙											○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	○	○	○	○	○	○	○	○	○	○	○	○	○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	○	○		○	○		○	○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	○	○				○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수입증지 조례	○	○	○	○	○	○	○	○	○	○		○	○	○	○	○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	○	○	○	○	○	○	○	○	○	○	○	○	○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토지거래규제업무 과태료부과 기준 및 징수에 관한 규칙	○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	○	○			○	○		○		○				
<b>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b>		○		○		○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		○	○				○	○	○	○	○	○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규칙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	○	○	○	○	○	○	○	○	○	○	○	○	○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	○	○		○	○		○	○	○	○		○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감채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	○		○		○						
감채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										
공무원 하계휴양소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투자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

## 6.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주민생활지원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사무이다. 즉,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들이 자치입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이를 위한 기금설치조례, 각종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조례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사업지원조례”, “민간·가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규칙”,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다양한 형태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민복지분야도 역시 법률에 의한 위임조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와 비교해보면, 상당수의 조례가 위임조례로서 일치하지만,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와 같이 장사시설의 설치, 운영사무가 시·군에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례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b>제 5 편 주민생활지원</b>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	○	○			○	○			○	○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	○	○	○	○	○	○	○	○	○	○	○	○	○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	○	○			○	○	○	○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	○	○	○	○	○	○	○	○	○	○			○	○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	○	○	○	○	○	○				○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	○		○			○		○	○	○				○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시행규칙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	○	○		○	○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	○	○	○	○	○	○	○	○	○	○		○		○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	○	○		○		○		○						○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	○				○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					
공설납골당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	○		○	○					○		○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	○	○		○	○	○	○						○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		○	○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		○	○		○	○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		○	○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	○	○		○		○		○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	○	○			○	○	○	○	○	○					○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시행규칙		○	○		○	○						○			○	○

제 4 절 시 · 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조례/시행규칙		○				○		○		○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	○		○	○			○	○	○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	○		○	○			○	○	○	○		
장학회 설치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										○			○	
장학회 설치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														
자원봉사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자원봉사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		○	○	○				○	○		○	○			○	○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	○		○	○	○	○	○	○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시행규칙				○					○				○	○			
묘지사용 조례				○		○	○	○	○	○	○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조례					○												
가정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						○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지역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							○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시행규칙						○					○		○	○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	○						
영유아 보육 조례						○		○	○	○	○					
여성발전 기본 조례/시행규칙						○		○								
민간·가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규칙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		○	○	○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				○	○		○
어메니티 노인건강교실 운영관리 조례									○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								○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							
사회복지 개인신고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영모장려금지급 조례										○						
영모장려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규칙											○					
생활보호기금설치 조례												○				
천안인 의상 관리 조례													○			
모자복지위원회 조례													○			
마을봉사의 날 운영 조례														○		
장애인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공설영묘전 운영 조례															○	
보육위원회 운영 조례																○

## 7. 환경녹지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환경녹지분야에서도 자치구보다는 광범위한 사무권한이 시·군에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폐기물·오폐수의 관리 사무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보전조례”,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와 같은 구체적인 환경보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b>제 6 편 환경녹지</b>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		○			○	○	○	○				○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		○	○	○	○	○	○	○	○	○	○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	○		○	○		○	○		○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	○	○	○	○	○	○	○	○	○	○	○	○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		○	○	○	○	○	○	○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하수도사용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	○	○	○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										
환경기본 조례	○	○		○	○	○	○	○	○	○	○	○	○	○	○	○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		○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 4 절 시 · 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 조례	○															
푸른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		○		○			○	○	○	○	○	○	○	○	○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	○	○	○			○	○		○						○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 조례	○			○				○								○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 조례 시행규칙				○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	○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수도사업설치 조례	○				○	○		○		○		○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					○				○						
지방공기업 상수도회계 규칙	○									○	○	○	○			○
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 단속 규칙	○	○					○	○				○		○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							○		○	○			○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오수·분뇨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													○
상·하수도 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	○		○	○		○			○	○			○
자연경관 보전 조례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지하수 조례						○	○	○		○						○
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							○			
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시행규칙						○	○			○		○		○		○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 규칙							○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농공단지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금강하구 철새탐조대 설치 운영 조례									○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생활폐기물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아름다운 나무 조성 및 관리 조례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백석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시행규칙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 조례																○
주식회사홍주미트출자에 관한 조례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 8. 지역경제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중 하나이다. 도농복합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충청남도의 시·군에서는 인삼 등 지역특산물에 대한 인증조례,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지역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한 조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특색 있는 조례로는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아산시)”를 들 수 있다. 이 조례는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담고 있다.<sup>19)</sup>

이 분야에 있어서는 자치구의 자치입법 실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역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양한 지역적 정책들이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제 7 편 지역경제																

19) 유사한 조례로는 서천군의 “농업·농촌발전지원조례” 및 “어업·어촌지원조례”와 홍성군의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기업·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정수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		○	○					○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	○	○			○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	○	○	○	○	○	○	○	○	○	○	○		○		○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		○		○	○			○		○
소비자보호 조례	○			○	○	○							○	○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	○	○	○	○	○	○	○	○	○	○	○	○	○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	○	○	○	○	○	○	○	○						○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	○	○	○									○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시행 조례		○	○						○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													○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			○				○				○			
양수기운영관리 조례		○		○			○	○	○	○		○	○	○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	○		○	○						○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	○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	○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	
<b>귀농인 지원 조례</b>			○			○	○		○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													
인삼약초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삼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시행규칙			○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													
<b>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b>			○			○			○					○	○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 및 운영 조례						○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			○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			○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	○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	○		○								○
지에스(GS)이피에스(EPS) 부곡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											
에너지관리 조례					○					○						
에너지관리 조례 시행규칙										○						
항만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당진해운주식회사출자 등에 관한 조례					○											
당진해운주식회사 배당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		○	○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해나루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농공단지 관리 조례						○										○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				○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										
어항관리 조례						○		○	○							○
농·어업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농·어업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	○		○				

제 4 절 시 · 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b>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b>								○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	○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 운영 조례								○	○				○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업 · 농촌 발전 지원 조례								○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농 · 축 · 어업자금 융자 관리 조례								○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어업 · 어촌지원 조례								○								
김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시장 설치 조례										○						
농공지구 관리 조례										○			○			
테크노컴플렉스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기술연구집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지원에 관한 조례										○						
둔포전자 · 정보집적화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b>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b>										○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 특수목적 법인설립출자심의회 구성 및 운용 규칙										○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조례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b>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b>										○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법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에 관한 조례										○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수리시설물 관리 조례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기술연구집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농업진흥기금의 설치 운영 조례													○			
농업기반공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시행규칙																○
한국폴리텍IV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시행규칙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

### 9. 건설 및 도시주택분야의 자치입법 실태

건설 및 도시주택분야는 시 · 군의 경우가 자치구보다 광범위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입법의 유형이나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로관리나 교통체계에 관한 권한이나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 등에서 자치구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색 있는 조례로는 보령시의 “도시디자인조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와 같은 것들이 있으며, 아산시의 “경관조례”도 주목할 만한 자치입법이다.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b>제8편 건설</b>																
간이상수도 ·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	○	○	○	○	○	○	○	○	○	○	○	○	○	○	○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	○	○		○	○	○	○	○	○	○	○	○	○	○	○
상수도 급수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	○	○	○	○	○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주차장 설치 조례	○		○									○				○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				○
주차장 조례		○			○	○	○	○	○	○	○		○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	○		○		○	○		○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	○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징수 조례	○	○	○		○	○	○	○	○	○	○	○	○	○	○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	○						○	○	○				○		○
부실공사방지 조례	○		○	○						○	○		○	○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					○	○	○	○		○			○	○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조례	○	○	○	○	○	○	○	○	○	○	○	○	○	○	○	○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	○			○	○			○	○	○					○	
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 규칙	○			○	○	○				○			○			○
수리계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
지명위원회 조례	○	○	○	○	○	○	○	○	○	○	○	○	○	○	○	○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		○	○		○	○	○	○	○			○	○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			○	○	○	○	○	○	○			○	○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		○	○	○	○	○			○		○	○	○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 조례		○	○		○		○	○			○	○	○	○	○	○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			○	○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에 관한 규칙	○					○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시행규칙	○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금융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		○	○	○			○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	○	○						○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임시시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강경젓갈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				
가로명에 관한 조례			○									○				
농지개량사업시행 조례			○	○			○	○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	○								○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	○			○	○								○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								○				○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	○		○	○							○	○
간척농지기금특별회계설치 조례				○	○											
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 규칙				○	○					○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시행규칙				○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						
농업기반시설 용수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						○			○							○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		○			○	○				○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시행규칙						○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	○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규칙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시행규칙								○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시행규칙									○	○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하수도 설치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			
중수도 설치 권장에 관한 조례										○			○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상수도시설 보강비 적립 및 관리 조례												○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				
건설공사명예감독관계 운영 조례												○	○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			
중기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농업기반사업시행 조례													○	○		○
도로건물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시설 및 범위에 관한 조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			
먹는샘물 사업운영 조례/시행규칙														○		
먹는샘물 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b>제9편 도시주택</b>																
건축 조례	○	○	○	○	○	○	○	○	○	○	○	○	○	○	○	○
건축 조례 시행규칙													○			○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	○	○	○	○	○	○	○	○	○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 관리 조례 시행규칙					○											
<b>도시계획 조례</b>	○	○	○	○	○	○	○	○	○	○	○			○	○	○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	○	○	○	○	○	○	○	○	○	○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공동주택내 공동시설물 관리지원 조례	○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발행 규칙	○		○	○	○	○	○	○	○				○	○		
공영개발사업 설치운영 조례	○	○	○	○	○	○	○	○	○	○			○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									○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			○		○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			○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		○										
공동주택관리 조례		○	○		○		○			○		○				○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	○	○	○	○	○	○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				○		○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	○	○	○		○	○		○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시행규칙				○	○											
<b>공동주택 지원 조례</b>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													
현수막지정 게시대 설치 및 관리 조례			○													
도시개발 조례				○			○		○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										
<b>도시디자인 조례</b>						○										
<b>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b>						○										
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 및 보류지 관리 처분 규칙						○	○	○	○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 청산금 취급 규칙						○	○	○	○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	○	○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		○				○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규칙							○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			○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 규칙								○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및 공공용지 부담 규칙								○								
<b>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b>								○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								○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									○			○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	○	○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						
농어촌주택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						
<b>경관 조례</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				○		○				
배방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협의위원회 운영규칙										○						
배방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측량대행규칙										○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						
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시행규칙										○						
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 처분 규칙										○						
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관리 규칙										○						
도고기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측량대행 규칙										○						
도고기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및공공용지부담 규칙										○						
배방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배방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및 공공용지 부담 규칙										○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시행규칙										○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군립공원관리조례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조치원 침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					
조치원 침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측량대행 규칙											○					
조치원 침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지정 규칙											○					
조치원 침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취급및체비지관리처분 규칙											○					
조치원 남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시행규칙											○					
덕산 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				
덕산 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시행 규칙												○				
덕산 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환지 청산금 취급 및 체비지 관리 처분 규칙												○				
덕산 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지구내측량대행 규칙												○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			
농어촌주택지원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처리 규칙														○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시행조례 / 시행규칙															○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공원사업) 시행 조례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포집단시설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공원사업) 체비지 및 보류지 관리 처분 규칙															○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포집단시설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공원사업) 공공용지 부담 규칙															○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포집단시설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공원사업) 환지 및 청산금 취급 규칙															○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 회계 설치 조례															○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규칙															○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및 공공용지 부담규칙															○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처분 규칙															○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취급 규칙															○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대행 규칙															○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협의위원회 운영 규칙															○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규칙															○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제1·2지구 환지청산금 취급 및 체비지 관리 처분 규칙																○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지구 토지평가위원회 규칙																○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고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관리 처분 규칙																○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
도청 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																○

### 10. 보건, 읍·면·동 등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자치법규집의 편재상 제13편 사업소와 별도로 제10편 보건소와 제11편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지역의 특성상 보건위생 및 농업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제10편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정책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급여에 관한 지원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금산군의 “건강도시 기본조례”는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계획적 수단과 지원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실질적 의미의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11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금산군의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의 “아산맑은쌀 품질관리조례” 등이 특징적이다.

제12편의 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 문예시설, 복지시설 등 시·군 산하의 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가 대부분이다.

제13편의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등 하부행정단위의 업무집행을 위한 기준 등을 자치법규화한 것이다.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b>제10편 보건소</b>																
공중보건조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보건소 진료비 및 계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	○	○	○	○	○		○			○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	○	○	○	○	○	○	○	○	○	○	○	○	○	○	○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	○	○	○	○	○	○	○	○			○	○	○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	○		○	○	○	○	○	○	○			○	○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	○	○	○	○	○	○	○	○	○			○	○	○
출산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	○	○	○	○	○						○	○	○
축탁의료인 보수지급 규칙		○			○	○	○	○	○					○	○	
<b>건강도시 기본 조례</b>			○				○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			○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			○		○			○		○	○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					○			○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				○	○			
보건소 수가 조례								○						○		○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		
보건진료원 거주에 관한 규칙								○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	○	○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			○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정신보건자문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 수수료 징수 조례														○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보건의료원 사무전결처리 규칙														○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b>제11편 농업기술센터</b>																
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 부품센터운영 조례	○	○	○	○	○	○	○	○	○	○	○	○	○	○	○	○
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 부품센터운영 조례 시행규칙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	○		○	○		○		○					○
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b>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b>			○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농민대학 설치 및 운영 규칙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b>아산맑은쌀 품질 관리 조례</b>										○						
아산맑은쌀 품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			
농업기술센터직무대리 규칙												○				
농촌지도소사무전결처리 규칙														○		
<b>제12편 사업소</b>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충남 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	○				○				
야외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															
메밀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향토문화유적보호 조례	○		○	○		○		○	○				○	○	○	○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															
사적지구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						○					○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		○				○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칙						○	○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시행규칙				○												
시·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시행규칙					○											
관광자유료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시행규칙							○									
전통민속연수관 설치 운영 조례/시행규칙							○									
문화재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									
사적지 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		○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	○				○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		○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조례/시행규칙										○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			
시민건강타운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			
북부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			
북부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 지정 규칙													○			
북부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측량대행 규칙													○			
북부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 청산금 및 체비지관리처분 규칙													○			
북부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			
북부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 지정 규칙													○			
북부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 청산금 및 체비지관리처분 규칙													○			
북부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측량대행 규칙													○			
북부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협의회위원회 규칙													○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b>제13편 읍·면·동</b>																
리·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		○	○	○	○	○	○	○	○	○	○	○	○	○	○
명예 읍·면·동장조례		○					○							○	○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		○	○	○	○	○	○	○		○		○	○	○	○
통·반 설치 조례	○		○	○	○	○	○	○	○	○		○	○	○	○	○
반운영규칙			○	○	○	○	○	○	○	○	○	○	○	○	○	○
리직원규칙					○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		○				○	○	○	○	
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					○							○		○		○
읍·면 소형관광개발위원회조례													○			
읍·면 소형관광개발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	○			
읍·면장 징계 규칙																○

11.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재난안전관리분야는 대표적인 위임사무로서 대부분이 위임조례이다. 이 분야는 자치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특색 있는 자치법규로는 공주시와 홍성군의 “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를 들 수 있다.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b>제14편 재난안전관리</b>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	○	○	○	○	○	○	○	○	○	○	○	○	○	○	○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	○	○	○	○	○	○	○	○		○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	○	○	○	○	○	○	○	○	○	○			○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수방단운영 조례	○				○			○		○			○	○	○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	○	○	○	○	○	○	○	○	○	○		○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	○	○	○	○	○	○		○		○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						○			○			○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	○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	○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	○	○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	

## 12. 정책사업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이 분야는 자치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시·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치입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b>제15편 정책사업</b>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															
살기 좋은 금산만들기 추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							○			○	
한산모서관 관리 운영 조례									○							
시범모시공장 지정 및 지원 조례									○							
서천군 한산모시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							

13. 문화공보에 관한 자치입법 실태

문화관광분야는 자치입법의 특색이 잘 나타나는 분야로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치입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위임조례 이외에도 보령시의 “머드축제운영조례”와 같은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해수욕장 등이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b>제16편 문화공보</b>																

제 4 절 시 · 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문화의 집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	○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시행규칙	○	○		○	○	○		○	○			○	○			○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	○	○		○	○			○	○	○			○	○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
통계연보 발간 규칙	○	○	○	○	○	○		○	○	○	○	○			○	○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감경 규칙	○	○	○	○	○	○	○	○				○				○
청소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 규칙	○	○	○	○	○	○	○	○	○			○	○	○		○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향토문화유적보호 조례	○		○			○		○			○	○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평생학습 조례		○					○	○	○		○					○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시행규칙		○			○											
공공디자인 조례		○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마곡사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시행규칙		○														
마곡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			
마곡사 관광지 건축비 융자금 이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장사용료징수 조례		○	○	○							○		○			○
시장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					○
소비자보호 조례		○	○				○	○	○	○	○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				○						○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시행규칙		○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		○										
계룡산맑은물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시·군기 등에 관한 조례			○	○	○	○	○			○		○	○	○	○	○
농약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인삼선양위원회 조례			○													
자치종합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시행규칙				○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										○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시·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시·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						
강경것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시민의 날과 놀이향토제에 관한 조례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	○	○	○				○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
시·군민회관 설치 조례					○		○			○						
시·군민회관 설치 운영 규칙										○						
시·군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			
시·군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 4 절 시 · 군의 자치입법 실태조사결과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시행규칙																
문화예술창달위원회 조례					○											
비디오물 및 게임물유통 관련업소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주식회사 삼교호 함상공원 출자에 관한 조례					○											
삼교호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조례/시행규칙					○											
실내체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	○			○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										
만세보령대상 조례/시행규칙						○										
만세보령문화제 조례						○										
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 운영 조례						○										
홍보대사 조례						○	○	○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										
보령머드세계화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										
머드축제 운영 조례						○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시행규칙						○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			○				○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시·군지편찬조례							○		○			○				
충남 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									

제 3 장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재단법인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									
조형물심의위원회 조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조례								○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								○								
문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							
마량리 동백나무숲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									○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춘장대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 환지 규칙									○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체비지 매각 규칙									○	○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청산금 취급 규칙									○	○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토지 평가 규칙									○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측량 대행 규칙									○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규칙									○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규칙									○							
지역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아산시정신문 조례										○						
아산성용이순신축제위원회 조례/시행규칙										○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외암민속관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b>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b>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관광발전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	○	○					○			○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종합체육시설 사업비 지방채 조례/시행규칙												○				
도서관 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				
오룡경기장 사용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				
태조산수련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리 운영 조례/시행규칙												○				
아우내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				
<b>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b>													○		○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고남 패총박물관 운영 관리 조례/시행규칙															○	
민자유치사업 시행 조례															○	
홍주문화상 조례																○
시(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 례 명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
결성농요 전승보전 육성지원 조례																○

## 제 5 절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 1.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자치입법 실태 비교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사결과와 2009년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실태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의회 · 감사 · 공무원의 복무관계 · 재무관리 등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의회, 감사, 공무원의 복무관계, 재무관리 등의 분야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세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들에서는 자치법규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들에서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와 같이 광역자치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조례로 규율하고 있거나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와 같이 광역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자치법규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등 자치정책개발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령과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한 자치권의 한계 때문에 자율적인 행정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집행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치법규 또는 법령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치법규 등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치구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② 주민복지분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로 표현하고 있듯이 주민복지분야는 본질적으로 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영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법령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복지분야의 자치법규는 자치단체의 인구구성이나 산업구성 등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색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분야는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가 오히려 취약하며, 대부분이 복지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별 복지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중복되는 자치법규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자치사무의 재배분이 요청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각종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하되, 현실적인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사무처리가 되도록 자치법규간 조정이 요청된다.

### ③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자치법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의 취약성이나 산업구조의 편중 등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사



항적 제약을 가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비교적 광범위한 범위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산업구조의 개편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국책사업의 유치 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자치법규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④ 환경관리/교통/도시개발 등

환경관리/교통/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를 위한 자치법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치행정의 불모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한 반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치권의 행사가 곤란하다는 측면도 다른 분야와 다른 점이다.

## 2. 시·군과 자치구간 자치입법 실태 비교

자치구의 자치권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군보다 제약적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자치입법은 자치사무보다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집중되어 있다. 자치입법에 관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치권의 협소한 보장은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시·군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한 분야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개발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민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등 자치사무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위임조례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자치법규로 표현되고 있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 4 장 자치입법의 체계적 정립방안

### 제 1 절 지방자치에 관한 국가 입법원칙 정립

#### 1. 문제의 제기

현행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법령의 범위 안”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입법론적 해결이 아닌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조례와 법률유보의 관계에 대한 지루한 논의보다는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의 입법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정립함으로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2.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의 의미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법령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세법 등 지방자치에 직접 관계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개별법령들이 존재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의 의미를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우선 법령에서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이를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사무처리의 주체가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의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할 것이다.

총론의 논의처럼 사무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사무인가 자치사무인가를 구분하고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자치입법권의 대상으로 하고,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무이원론의 입장은 오늘날 국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처리의 주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인가를 판단하고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을 입법할 때의 원칙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 3.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의 “입법원칙”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을 입법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단 법률의 제정과정에서는 의회에서 직접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와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경우에는 정부내의 입법절차가 적용된다.

국회의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으로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관련되는 입법원칙을 적용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일단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① 법률(안)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가의 여부 심사, ② 개별사무가 지방자치단

체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무인지의 여부 심사(보충성의 원칙), ③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기회가 보장되었는가(의견청취 기회보장의 원칙)와 같은 입법원칙을 철차적으로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국회법에, 정부제출안의 경우에는 법제업무심사규정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의 본질 적합성심사와 사무배분에서의 보충성의 원칙적합심사의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세부심사기준을 사전에 정립해 두고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법령(안)을 심사하고,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법령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안의 제안자는 해당 사무의 실질을 고려해서 조례위임사항과 대통령령·부령위임사항을 고려하여 법률안을 작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 2 절 자치구의 자치기능 재검토

### 1. 현행 자치구의 자치기능에 대한 검토

현행 자치구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기 이전의 행정단위로서 존재했던 구(區)를 자치구로 한 것이라는 연혁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자치구의 자치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라 함은 사실상 주민이 경제적·문화적으로 밀접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 기반이 존재하고,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또 현실 행정상으로도 상당정도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의 기본적 기능을 부여받은 지역단체일 것을 필요로 한다.<sup>20)</sup>

그러나 현재의 자치구는 대도시지역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주민의 공동체의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에

20) 일본 최고재판소 1962년 3월 27일 대법정 판결

대한 과도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집행사무 또는 위임사무만을 담당한다면 대도시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문제와도 연계시켜서 자치구의 자치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 2.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자치구의 자치기능 검토

현재 진행중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강소국연방제 논의를 제외하면 현재의 2계층제를 1계층제 또는 1계층제와 2계층제의 혼합형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현재의 2계층제를 1계층제로 하는 방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합을 통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형성하고,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1계층제와 2계층제의 혼합형은 광역시에 속해 있는 자치구를 폐지하되,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은 존치시키는 방안이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방향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자치기능을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자치구는 협소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군과는 다른 행정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행정서비스는 거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 점, 현실적으로 자치기능 보다는 집행사무가 사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자치구의 자치기능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구의 자치기능존폐에 대한 검토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에서도 지방자치의 실현정도에 대한 자치구 공무원의 인식태도나, 상급기관과의 사무중복시 우선처리기관으로 광역

자치단체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치구의 자치기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 제 3 절 자치법규의 자체 심사기능 강화

#### 1. 현행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대한 검토

현행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은 주로 업무담당공무원이 자치법규안을 작성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등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고 있다. 이 때 같은 자치단체 내부의 공무원이 자치법규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심사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자치법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3~5년 이내에 보직이 교체되는 현실 속에서 자치법규심사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그러하다. 또한 피심사자와 심사자 자신의 입장이 거꾸로 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누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 2. 자치법규 자체심사 기능의 강화

중앙정부의 법령(안)은 법제처라고 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법제 전문기관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제정되기 때문에 체계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치법규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적·물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조직을 두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정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해 온 소속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을 “○○

분야 자치법규심사관”으로 임명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 소요에 따라 운용하는 방안이나 외부전문가 예를 들어 외부법제전문가pool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심사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같이 자체적으로 “자치법규 입법심사 기준표”와 같이 입법심사기준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서 자치법규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시의 자치법규 입법심사 기준표는 첫째,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사후관리의 대기능, 20개의 소기능, 111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된 매우 체계적인 것이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 심사관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제처에 “자치법규심사지원단”과 같은 조직을 둬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및 판례

- 강수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법학연구제24집(2006)
- 김병기,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사유와 대법원 제소, 행정법연구 1999 하반기
- 김영천,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초, 지방자치법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2002. 12)
- 김철용, 행정법Ⅱ(제5판), 박영사, 2005
- 김희곤,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0집 제5호, 2002
- 박균성, 행정법강의(제5판), 박영사, 2007, 918쪽
-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7
-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8. 8
- 백종인,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학제3권제1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 6
- 이혜영, 지방의원발의활성화를 위한 입법고찰, 외법논집 제22집, 2006. 5
- 조성규,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조정찬, 위임조례 위주의 조례입법 극복방안, 지방자치법학회 학술발표회, 2005



참 고 문 헌

- 최민호, 일본의 지방분권추진일괄법의 내용과 시사점, 지방행정, 2003. 9
-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최환용, 입법평가의 실험과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입법동향과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2008년 여름호
- 최환용,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시사점,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통권 제29호
- 최환용, 지방자치법제의 쟁점과 전망, 법제연구 통권제34호, 한국법제연구원, 2008
- 하세현,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의 발휘와 그 확충방안,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제2호, 2005
- 헌재 1995.4.20. 92헌마264, 279 전원재판부
- 헌재 1995. 4. 20, 92헌마254, 279 결정
- 헌재 1991. 2. 11. 91헌마21, 판례집 3, 91, 100
- 대판 1991. 8. 27, 90누6613
- 대판 1997. 4. 25, 96추251
- 대판 2005. 5. 30 선고 99추85 판결
- 대판 1987. 9. 29, 86누484 ; 1992. 1. 21, 91누5334
- 대판 2003. 9. 5, 2001두4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판 1992.6.23 선고 92추17판결

## (2) 외국문헌 및 판례

### 1) 영미서

Bruce C. Daniels(ed.), Town and County : Essays on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n the American Colonies, Wesleyan University Press, Middletown, Connecticut, 1978

Chauncey C. Binney, Restriction upon Local and Special Legislation in State Constitutions, Kay & Brother, Philadelphia, 1894

David J. McCarthy, Jr., Local Government Law in a Nutshell(Fourth Edition), West Group, St. Paul, Minnesota, 1995

Ernest S. Griffith, The American System of Government(Third Edition), Menthuen & Co. Ltd, London, 1976

Jack C. Plano & Milton Greenberg, The American Political Dictionary(eleventh Edition), Harcourt College Publishers, Fortworth, Texas, 2002

James Bryce, The American Commonwealth, Macmillan & Co., London, 1888. ; A Liberty Classics Edition, Liberty Fund, Inc., Indianapolis, Indiana, 1995.

Thomas C. Marks, Jr. & John F. Cooper, State Constitutional Law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 St.Paul, Minnesota, 1998

### 2) 일 서

(財) 日本都市センター, 分権型社会における自治体法務, 2002

大森政輔・鎌田 薫 編, 立法學講義, 商事法務, 2006

참고문헌

- 鈴木庸夫編, 自治体法務改革の理論, 勁草書房, 2007
- 木佐茂男 編, 自治立法の理論と手法, ぎょうせい, 1998
- 山口道昭, 政策法務入門, 信山社, 2002
- 田中孝男, 分権時代の法制評価を考える-政策法務を下支えする自治体の法制管理, 地方自治職員研修32巻3号, 1999. 3
- 田村達久, 地方分権改革の法学分析, 敬文堂, 2007
- 内田和夫, “川崎市の市民オンブズマン条例の制定”, 自治総研8月号, 1990
- 中原茂樹・小早川光郎編, 地方分権と自治体法務, 2000
- 曾根暁子, 条例の評価と進化, 北村喜宣編, □□分権条例を創ろう! □□, ぎょうせい, 2004
- 村上順, 日本の地方分権, 弘文堂, 2003
- 平松毅, “政治倫理条例に関する法的諸問題(一)(二・完)”, 自治研究제70권 제1호・제2호, 1994
- 平井喜雄, 法政策学-法的意思決定および法制度設計の理論と技法, 有斐閣, 1988
- 真砂泰輔, “要綱の法的性質”, 行政法の争点, 有斐閣, 1990
- 関 哲夫, 条例制定権の限界, 行政法の争点, 有斐閣, 1990

# 부 록



**(문 1-1번은 문 1번의 ③④번 응답자에만 해당)**

1-1.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간섭과 규제
- ② 지방자치법령의 애매함
- ③ 지방의 인프라 부족과 행정능력의 미숙
- ④ 지역민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의식
- ⑤ 기타( )

지방자치입법에 대한 이해도

2. 선생님께서는 지방자치사무와 지방자치입법권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는 아는 편이다
- ③ 잘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른다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 대한 이해도

3. 선생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는 아는 편이다
- ③ 잘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모른다

지방자치입법권한

4. 선생님께서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는 법이 부여한 자치입법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조례나 규칙 등의 제·개정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문 4-1번은 문 4번의 ②번 응답자에만 해당)**

4-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시요.

(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

- ① 법규상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 ②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주로 담당하므로







근무년수

DQ 3. 선생님께서 현재 소속기관에서 일하시게 된 것은 얼마나 되셨는지요?

- ① 4년 이하    ② 4년~8년 이하    ③ 8년~12년 이하    ④ 12년 이상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